
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

- 2025~2029 -

2025. 2.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| 1 |
| II. 정책 평가 및 사회 여건 | 2 |
| III.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 방향 | 7 |
| IV. 추진 방안 | 12 |
| 1.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| 12 |
| 2. 인프라 확충 | 35 |
| 3. 반려문화 확산 | 52 |
| 4. 동물영업·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| 66 |
| V. 추진체계 | 82 |

I. 추진 배경

◆ 그간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, 국민 인식 및 정책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

□ 「동물보호법」 전부 개정('12)에 따라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·시행 근거 마련

○ 동물복지 기본방향, 동물보호 시설 지원·관리, 반려동물 영업, 동물 의료, 국민 교육·홍보 등에 대한 중장기 방향 및 계획 설정

□ 그간 2차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, 최근 '동물복지 강화 방안'을 수립·시행하며 신규 정책·제도를 적극 도입

* ①(제1차, '15~'19) 동물보호정책의 기틀 마련, ②(제2차, '20~'24) 동물보호·복지 제도 기반 강화, 인프라 확충, 국민 인식개선 등 1차 계획 기반으로 제도 고도화, ③(동물복지 강화방안, '22) 제2차 종합계획 중간평가 및 보완방향 제시

○ 최근 「개식용종식법」 제정('24.2)을 통해 오랜 사회적 갈등 해소

□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·추진 10년을 맞아,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조성을 위한 보완 사항 점검 및 신규 과제 반영

○ 동물복지 분야 종합계획의 미비점과 내·외부에서 지적된 개선 필요 과제 등을 발굴하여 중장기 방향 제시

○ 주요 정책추진 과제* 중 미완료 과제의 지속 필요성 및 개선 방향, 국회·동물보호단체·언론 등 외부 지적 사항 검토

* (동물복지 강화방안, '22) 77개 과제 중 61개 과제 추진완료, 16개 추진 중('24년말 기준)

Ⅱ. 정책 평가 및 사회 여건

1 「제2차 종합계획」 및 「동물복지 강화 방안」 평가

◆ 「제2차 종합계획(‘20.1) 및 동물복지 강화 방안(‘22.12)」 3대 전략

- ①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②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③ 동물보호·복지 사후조치 실질화

①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

- **[주요 성과]**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정책 총괄 및 부처 간 협업기반 구축
- 국(局) 단위로 조직을 확대·신설*(‘22.12월)하여 동물보호 및 관련 영업, 동물의료 분야 등 동물복지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 마련
 - 「동물복지위원회」 위상 격상*, 심의 기능 부여, 환경부·해수부·식약처 등 관계부처 참여(‘23)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
- * 위원장 : (기존) 민간 위원 중 호선 → (개선) 농식품부 차관·민간 공동위원장
심의위원 : 10명 이내, 민간 전문가 → (개선) 20명 이내, 관계부처도 참여
- **[미흡한 점]** 동물 ‘보호’에서 ‘복지’* 중심으로 법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미이행
- * 동물복지 :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, 출생(생산)부터 죽음까지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·영양·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 확대
-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에 따른 기존 법체계 부합성 여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
 - 실질적 동물복지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, 인력 확충 등 기타 제반 여건도 아직 미흡

②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

- **[주요 성과]** 사육포기동물 인수제, 농장동물 복지 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동물학대·유기 등 예방 및 전반적인 동물복지 수준 강화
 - 장기입원 등 소유자가 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*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선제적으로 인수·보호하는 제도 도입('23.4월)
 - *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·요양, 병역복무, 재난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
 - 사육·유통 단계 동물복지 기준을 법제화('20~)*하고, 동물복지 인증기관 지정제('24)**를 도입하여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수준 제고
 - * 임신돈 고정틀(stall) 사육 제한('20), 동물복지 운송차량·도축장 법적 기준 마련('24) 등
 - ** 인증기간 단축(3개월→2), 인증제도 홍보 등을 위해 전문인증기관 지정(축산환경관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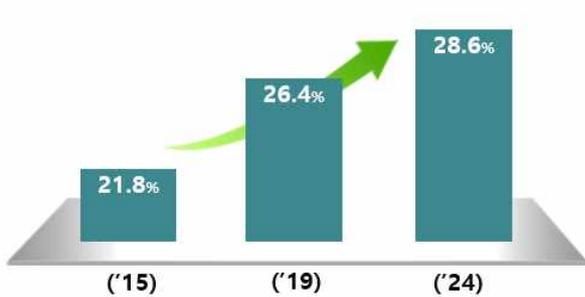
- **[미흡한 점]** 동물사육금지제 도입, 동물등록 제외지역 폐지, 입양 전 의무교육 등은 사회적·행정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연
 -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* 도입이 필요하나,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세부 기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
 - * 동물의 죽음, 상해, 성적 이용, 싸움 등의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동물의 보유·관리·직업적 취급 등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(미국·영국·독일 등)
 - 유실·유기 대응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 예외* 지역·대상을 폐지하고 모든 '개'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 필요
 - * (제외지역)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, 도서지역은 시도 조례로 의무 등록 지역에서 제외 (등록대상) ①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, ②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
 - 학대·유기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이 필요하나, 아직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자 등에 한정하여 운영 중

③ 동물보호·복지 사후조치 실질화

- **(주요 성과)**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등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
 -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/3천만원으로 강화('22)
 -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76개소까지 확충*하고, 센터 내 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 의무, 인력기준 신설 등** 동물 관리수준 제고('23.4월)
 - *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(시설위탁 포함) : ('15) 28개소 → ('23) 76(2.7배 ↑)
 - ** 의무교육 : 동물보호법령 등 연간 3시간 이상,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인력기준 :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·관리인력 확보
 -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신고제 도입* 및 시설·운영기준 준수 의무 마련('23.4월), 환경개선도 지원('22~)
 - * 신고의무 : 보호동물 400마리 이상('23.4월~), 100마리 이상('25.4월~), 20마리 이상('26.4월~)
- **(미흡한 점)**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부실 문제가 언론보도·지적되고 있으며,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이행 저조
 -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인력·예산 부족*으로 대부분 시설이 포화 상태이며,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운영 매뉴얼도 미비
 - * 유실·유기동물 구조 규모 113천마리 대비 전국 동물보호센터 동시 수용 능력은 20천마리(17.4%)에 불과하며, 구조·보호비 예산도 연간 40천마리 수준
 -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다수가 농지·산지 및 건축 등 관련법 위반으로 문제가 있어 신고제 이행이 곤란
 - * 신고 의무 미 이행 시,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 - 지자체·민간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입양 또한 저조하여, 전체 반려동물 입양경로의 약 10%에 수준에 불과

2 우리 사회의 여건

- **[긍정 측면]**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, 지난 2차례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전반적 사회인식 개선
 - (양육 현황) 반려동물 양육 추세는 완만한 성장세로서 최근 양육 가구 비중은 28.6%, 주요 반려동물인 개·고양이는 77백만 마리 수준('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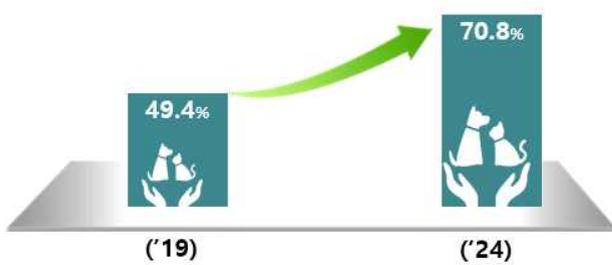


<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('15→'24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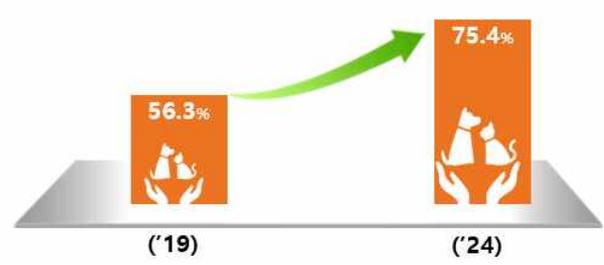


<반려동물(개·고양이) 수 추정('15→'24)>

- (인식개선)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, 특히 최근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성과



<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 인지도('19→'24)>



<동물보호법 인지도('19→'24)>

- (적정조치) 동물 복지 인식 수준 개선에 따라 동물학대 목격 시 실제 신고를 통해 적정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

*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(복수 응답, 국민의식조사) : ('19→'24) 국가기관에 신고 (45.0%→55.9), 동물보호단체에 신고(34.5%→46.7), 조치를 취하지 않음(25.4%→11.2)

□ **[부정 측면]** 동물학대 범죄 및 유실·유기동물은 지속 발생, 동물 복지 인식격차로 인한 갈등·민원도 꾸준히 제기

○ (동물학대) 불법 번식장 등의 동물학대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해 사전적 예방 중심 정책 마련 요구

* 「동물보호법」 상 형벌(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 규정은 선진국 수준

< ○○시 불법 번식장 사례 >

- (개요) 지자체 변경허가 없이 불법증축한 건물에서 약 1천 4백마리 동물 불법 사육
- (경과) 대표 등 운영진은 무면허 진료·동물학대 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('23.9월), 불구속 기소('24.12월)
- (보호조치) 학대동물 구조 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분산하여 보호하면서 입양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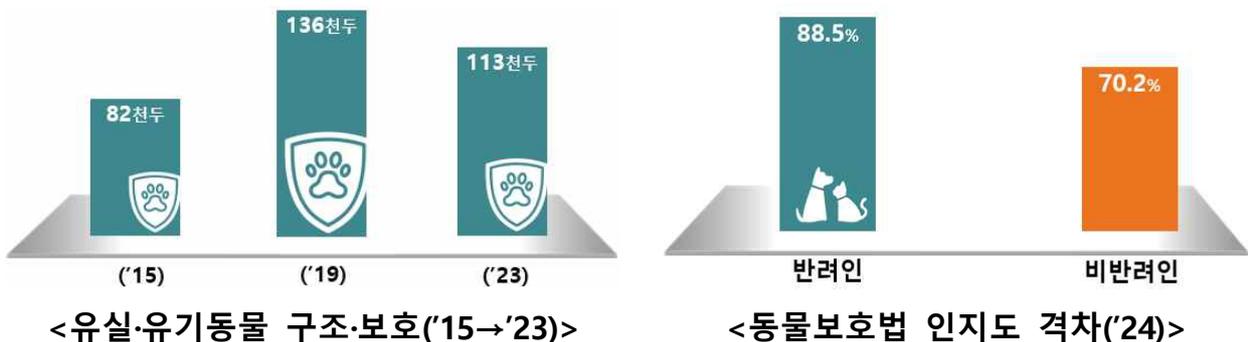


○ (유실·유기) 유실·유기되어 구조·보호된 동물은 '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, 최근 11만 마리 수준에서 정체

- 보호소 내 자연사·안락사 비중은 45.6% 정도로 높은 편인 반면, 반환·입양·기증 비중은 39.2%에 불과('23년 기준)

○ (인식격차)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동물복지 관련 제도의 인식격차가 크며, 개물림 등 안전사고, 길고양이 돌봄 등 관련 갈등이 지속

* ('22~'24 민원접수 현황) 길고양이 먹이주기 등 관련(604건), 개물림 등 안전관리(88) 등



Ⅲ.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방향

1 기본 방향

- ◆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, **주요 사회적 이슈**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여 지속 개선 도모

- **(집행여건) 그간 도입·시행한 제도의 실질적 효과 달성을 위해 집행 인력조직 확충**
 -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도입한 다양한 제도*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보완
 - * (예) 반려견 동물등록제 도입 10년 경과에도 등록률은 약 60% 수준으로 추정,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직영화, 개소수 증가 등에도 관리·운영 부실 등 문제 지속
 - 보호시설 운영, 명예감시활동, 홍보·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 참여도 확대하고, 중장기적으로 동물복지 전담 지원기구 설립을 추진

- **(사회문화) 반려인, 반려동물,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확산**
 -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·홍보 등을 지속 확대
 -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문화·인식 고도화

- **(현장요구) 국회·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, 동물복지과제 지속 발굴해소**
 - 동물복지위원회 분과(홍보, 영업 등) 신설, 동물복지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극 참여·논의
 - 동물사육금지제,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, 영업관리 강화·개편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·추진

2

핵심 정책과제

- (안전망 강화)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사육금지제도 도입 및 유기행위 법령 정비
 - (사육금지)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강화 및 임시보호 처분 등과 연계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* 제도화('27) 추진
 - * 규율 형식(주체)은 법무부, 법원행정처, 지자체, 전문가 등과 지속 협의하여 결정
 - (동물유기)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보호·관리 책임 명확화 및 장소범위 확대*, 처벌 규정 강화** 등 동물보호법 개정('25)
 - * (현행)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 → (개선방향) 동물병원 호텔 등에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 포함
 - ** (현행) 300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선안) 500만원 이하 벌금

- (인프라 확충) 인력 확충 및 구조동물 보호역량 강화, 등록 활성화로 정책여건 개선
 - (인력) 명예동물보호관*, 자원봉사자 등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, 지자체 적정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
 - * (현재) 동물보호관 지원, 단순 계도·홍보 → (개선안) 동물 안전관리, 영업자 공동 점검 등 (사례) 일부 지자체에서 수의사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, 피학대동물 진단·치료 등 실시
 - (보호역량) 보호센터에 입양·훈련시설,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, 종사자 교육 강화* 및 민간 참여 확대**를 통해 보호 수준 제고
 - * (현행) 온라인교육 3시간 → (개선안) 현장교육 추가, 내용·이수조건 강화('25)
 - ** 자원봉사 세부 분야,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, 민간 임시보호 활용 확대 등 근거 마련('25)
 - (등록) 모든 '개'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여 특수목적견 및 생산업 부모견·자견 등 대상 확대 및 제외지역 폐지('25~, 단계적)
 - * (현행) 목적·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, 지역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, 도서지역 등 제외

□ **(문화 확산) 민간협업, 매체 활용 등을 통해 민간 참여 장려 및 통일된 메시지 전달**

- (민·관 시너지)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*, 정책홍보·캠페인** 등 민·관 협업 강화 및 민간의 현장 노하우 적극 활용

* 연간 운영계획 수립,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기교육, 활동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등

**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를 구성하여 개식용 종식, 교육, 안전관리, '동물보호의 날' 행사 등 현안 관련 홍보·캠페인 통합 추진

- (교육 확대) 초·중·고교 교육과정 동물복지 교육 확대, 반려인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('26~), 영업자 정기교육도 실시

□ **(동물영업 개선) 동물영업 구조 개편 논의, 준수사항 강화, 이력관리 등 추진**

- (추진기반)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정책 심의·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마련,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, 자율성 유도, 점검 강화 등 병행

* 영업구조 개편 및 법제화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

- (관리강화)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* 및 자율적 관리기준 준수 유도**, 갱신제 도입(3년)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실질적 동물복지 수준 제고

* 마리당 사육 면적, 관리인당 사육 마리수 설정 등 시설 및 인력 기준 단계적 상향

** 영업별 동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, 구체적 준수사항 보급 및 교육 강화

- (이력관리) 생산업 부모견 등록 의무화('25~) 및 차견과 연계, 판매업 동물등록사항 사전 확인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생산 방지

□ **(동물의료·연관산업) 전문의제도 도입 등 동물의료 체계 개선, 연관산업 체계적 육성**

- (동물의료) 수의전문의·상급(2차)병원 도입 등 동물의료 체계를 정비하고, 동물의료 육성·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

- (연관산업)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('25~), 펫푸드 특화제도(영양표준, 표시기준 등) 마련 등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

| | | |
|---|--|---|
| <p>비전</p> | <p>사람과 동물이 다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</p> | |
| <p>목표</p> | <p>◇ 동물 ‘보호’에서 적극적 ‘복지’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* 사육금지제도 도입, 동물등록제 확대, 불법영업 관리강화 등 「동물복지법」 여건 조성</p> <p>◇ 학대·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 * 유실·유기 발생 : (‘23) 113천마리 → (‘29) 60천마리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‘29년까지 현행 50% 수준으로 감축</p> | |
| <p>추진 과제</p> | <p>①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</p> | <p>① 동물학대 예방 강화 ② 반려동물 유실·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 ③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 관리시스템 개선 ④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복지 증진 ⑤ 길고양이·실외사육견 복지개선, 관리 강화</p> |
| <p>② 인프라 확충</p> | <p>② 인프라 확충</p> | <p>①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②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 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·관리 개선 ④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⑤ 동물복지 R&D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</p> |
| <p>③ 반려문화 확산</p> | <p>③ 반려문화 확산</p> | <p>①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 추진 ②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 ③ 동물보호·복지 교육 확대 ④ 차질 없는 개식용 종식 이행 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</p> |
| <p>④ 동물영업·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</p> | <p>④ 동물영업·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</p> | <p>① 동물영업 관리 강화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② 동물의료 체계 및 인력 양성기반 정비 ③ 반려동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④ 동물장묘업 운영 합리화 ⑤ 반려동물 서비스업 제도개선</p> |
| <p>추진 체계</p> | <p>▶ 관계부처, 지자체,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·강화 ▶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추진</p> | |

참고

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과의 비교

| 4대 과제 | 제2차 종합계획('20~'24) | 제3차 종합계획('25~'29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 안전망 | | |
| 동물학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벌 등 사후 조치 강화 * 처벌 강화(2년/2천만원 → 3/3), 교육 이수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육금지제도 도입으로 사전 예방 조치 강화 |
| 유실·유기 예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벌 및 사전조치* 강화 * 사육포기동물의 지자체 인수 근거 마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기 범위 확대 및 처벌 상향 (300만원 → 500) 등 예방기능 강화 |
| 봉사동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봉사동물 실태조사 추진(법적 지원 근거, 통합 관리방안 등은 부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봉사동물 지원 근거 마련,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통합관리 |
| 실험동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윤리위 기능 강화 및 온라인 포털 구축 등 실험기관 관리체계 마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맞춤형 컨설팅·교육으로 전문성 제고, 외부점검반 운영 등 관리 강화 |
| 농장동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의 사육·유통 단계 기준 법제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농장 시설·관리 등 동물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|
| 2 인프라 | | |
| 인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체계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 적정인력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,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 |
| 동물등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식표 방식 폐지, 등록 범위 확대(3개월령 → 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'개' 등록 의무화, 생체인식 등 기술 검증체계 마련 등 등록 활성화 |
| 동물보호센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·인력 기준 강화, 지자체 직영 센터 확대 등 관리기반 마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별 확충 목표 설정, 평가제 도입, 민간의 운영 참여 확대 |
| 민간보호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제 도입으로 제도권 편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제 정착 * 이행계획서 제출 → 합법화 지원 |
| 3 문화 | | |
| 협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 현안 논의 등 위원회 활성화, 동물복지 캠페인 등 민관 협력 강화 |
| 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업자 등 의무교육 대상 확대, 입양 전 교육 등 콘텐츠 개발·제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양 전 교육 의무화, 초·중·고 학교 교육, 지자체 등 현장교육 확대 |
| 개식용 종식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업계 전·폐업 이행 상황 철저 점검, 개식용소비 문화 종식 |
| 안전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맹견 기질평가 도입 등 관리의무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중성화 수술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|
| 4 영업·의료·연관산업 | | |
| 영업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산업 시설·관리 기준 강화, 무허가 영업 처벌·점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갱신제 도입, 동물관리 가이드라인 배포·교육 등 실효적 관리 강화 |
| 이력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력제 도입 방안 검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력 관리 시행(부모견 등록 의무화, 생산·판매 단계 동물등록 확인 등) |
| 의료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과목 및 상급병원 도입, 의료 인력 양성 등 동물의료 체계 개선 |
| 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제도(사료관리법) 활용 산업 관리, (별도 육성 방안 미흡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육성 근거법 제정,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, 혁신 거점 조성 등 체계적 육성 |

IV. 추진 방안

1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

1-① 동물학대 예방 강화

◆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추진('27)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 교육·캠페인 확대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|--|
| 재발방지 | ▶ 동물학대행위자 유죄판결 선고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,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| ▶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동물 사육금지제도 등 도입 |
| 적정처벌 | ▶ 처벌 규정 지속 강화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실제 처벌수위 부족 | ▶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, 동물학대 범위 및 처벌의 단계적 확대·강화 |
| 인식개선 | ▶ 영업자, 반려인 등의 인식 부족으로 동물학대 지속 발생 | ▶ 동물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,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확대 |

1. 추진 방향

□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 확대·강화*해왔으나, 동물학대 사례가 지속 발생**하고 있는 상황

*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: ('08) 500만원 이하 벌금 → ('12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('18) 2년 / 2천만원 → ('21) 3년 / 3천만원

**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(경찰청) : ('21) 5,491건(월평균 458) → ('22) 6,594(549) → ('23) 7,245(603)

□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규정 외에도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

○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 사육금지 등 신규 제도 도입 및 동물학대 판단 기준 등 마련 추진

* 미국·영국·독일·스위스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해 모든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 적용

○ 또한,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영업자, 반려인 등 대상 동물학대 예방 교육 강화 필요

2. 주요 과제

- (재발 방지) 동물학대 방지 및 피학대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자 점검 강화, 동물 사육금지제 등 도입 추진(27) 동물보호법
-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반환* 요건을 강화하고,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화
 - * 지자체는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5일 이상 격리·보호조치하고 소유자가 사육 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 시 소유자에게 동물 반환(동물보호법 제34조·제41조)
-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 도입 방안 마련(25~)
 - * (예시) ①중한 학대행위로 ②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③동물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④일정기간(1~5년) 동물 사육을 금지(형사제재 또는 행정처분)
 - 관계기관(법무부, 지자체 등), 동물보호단체,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사육금지 세부 기준 수립
 - * 간담회·토론회(25.上) → 법안마련(25.下) → 입법추진(26) → 제도시행(27)
- (적정 처벌) 동물학대범죄 적정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, 처벌 범위 확대,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추진
-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합리적 양형기준*을 마련(25.3월, 대법원 양형위원회)하고, 적정 처벌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속 추진
 - *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,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토록 하여 일정 구속력 부여
-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(아동학대처벌법, 노인복지법 등)를 참고하여 동물학대 범위 및 처벌에 대한 단계적 확대·강화 추진
 - * 동물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발견 및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피해자인 동물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등과 유사

- 지자체-경찰청-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*를 구성(MOU 체결)하여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**에 대해서는 신속·적극 대응

*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,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협조 체계(자료 제공 협조, 공동 조사 등) 구성 등 상호협력

** 예시: △△군 개·고양이 집단폐사('23.3월), ○○시 불법번식장 사건('24.10월) 등

- (수의법의검사* 표준화) 동물학대 행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지자체 검사기관 확대, 수의법의검사 전문성 강화 및 표준화 등 추진('26)

* 법률상 문제되는 수의학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

- 수의법의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검사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 추진, 지자체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및 운용 등 관리

- (인식 개선)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, 동물 복지 교육, 캠페인 등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 개선

- 영업자 및 동물보호센터 의무교육, 입양자 교육 등에 동물학대 예방·대응 교육 포함 및 동물학대 근절 대국민 캠페인 추진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 사육금지제 도입 | | | | |
| | ○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 | | | | |
| | ○ 동물학대 처벌 확대 | | | | |
| | ○ 동물학대 예방 교육 | | | | |
| | ○ 수의법의검사 표준화 | | | | |

①-② 동물 유실·유기 방지

◆ 유실·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등록 활성화, 점검·교육 확대 등 추진

* 연간 유실·유기 발생규모 : ('23) 11.3만마리 → ('26) 8 → ('29) 6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등록제 | ▶등록의무 예외 지역·대상 등 존재 | ▶모든 개를 등록하여 유실·유기 방지 |
| 점검·교육 | ▶반려인 대상 동물 관리 상태 관련 점검·교육 부족 | ▶반려인 대상 주기적 점검·교육으로 반려동물 유실·유기 감소 |
| 신고·구조 | ▶유실·유기동물 발견 시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 | ▶유실·유기동물 발견 시 통합신고 번호로 실시간 신고·대응 |
| 처벌강화 | ▶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 | ▶동물 유기 시 500만원 이하 벌금 |

1. 추진 방향

□ 동물 유기 행위가 지속 발생*하고 있으며, 대다수 지자체에서 동물 보호센터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구조·보호 중

* 지자체 구조·보호동물: ('21) 118천마리 → ('22) 113 → ('23) 113

○ 유실·유기 신고를 통해 구조·보호된 동물(개) 중 대다수는 미등록 되어 있어 소유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상황

□ 그간 동물 유실·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 운영, 홍보·교육, 유기 처벌 강화(300만원 이하 과태료→벌금, '20년) 등을 추진하였으나,

○ 법령상 한정적 정의*와 소유자 대상 점검 및 유실·유기동물 통합 신고 방식 부재**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왔음

* (등록 동물)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, (유실·유기동물)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

** 유실·유기 동물 발견 시 발견자가 각 지자체 동물 담당 부서 개별 연락처로 유선 신고

□ 이에 법령상 정의 확대,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점검·교육 추진, 유실·유기동물의 신고 통합관리 등 추진 필요

2. 주요 과제

- (등록제 활성화) 반려동물 유실·유기 방지 및 신속 반환을 위해 등록제 개선, 인센티브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동물등록 활성화
 - 등록대상 동물*을 확대하고, 등록 의무 제외 지역**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모든 개(월령 2개월 이상)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
 - * (현행)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,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→ (개선) 모든 개
 - **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·면, 도서지역은 시·도 조례로 의무 등록 지역에서 제외
 - 취약지역을 위한 등록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(‘26)하고,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이용 시 등록여부 점검* 등 관리방안 마련(‘25)
 - *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·공원 등은 동물등록 시 이용 가능
- (점검·교육) 반려동물 대상 돌봄 상태, 유실·유기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·관리하고 예비 반려인 대상 교육 확대 추진
 - 반려동물 등록 여부 점검 및 등록정보 현행화와 연계하여 동물의 돌봄 상태, 유실·유기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·관리하는 체계* 구축(‘25)
 - * 지자체 담당자, 명예동물보호관이 반기별 현장 점검 또는 온라인 점검 등 추진
 - 반려동물 양육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, 동물 행동 교육 방법 등을 입양 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비 반려인 등 교육 의무화(‘26~)
 - * 예비 반려인이 ‘동물사랑배움터’(apms.epis.or.kr)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수수료 발급, 반려동물 입양·구매 시 보호시설·펫숍 등에서 수수료 등 증빙자료 확인
- (통합신고시스템) 누구든지 유실·유기동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 운영 및 신속 대응 추진
 - 분실·발견 신고 민원 통합 전화번호를 운영(‘25)하고,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 협업 등을 통한 앱 개발 추진
 - * (현행) 관할 지자체에 전화 신고 → (개선) 통합콜센터에 간편 신고, 앱에 사진·장소 등록 등
 - 반려동물 유실 시 찾을 수 있는 경로·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다각화하여 반환을 제고

□ (제도 정비)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신설, 처벌 강화 추진 동물보호법

- 공공장소 외 장소*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'유실·유기동물' 범위 확대 및 '유기' 행위 정의 규정 신설('25)
 - * 반려동물병원·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,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가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등 사례 존재
-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유기 행위의 개념 및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유기 행위 방지 도모
- '유실·유기동물' 정의에 있는 장소(도로·공원 등 공공장소) 범위 확대
-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('25)
 - * (현행) 300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정안) 500만원 이하 벌금
 - ** 해외의 경우,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약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 행위 처벌이 매우 강함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등록제 활성화 | | | | | |
| | ○ 반려동물 돌봄상태 등 점검 | | | | | |
| | ○ 입양 전 교육 의무화 | | | | | |
| | ○ 통합 신고 체계 마련 | | | | | |
| | ○ 유기행위 처벌 강화 | | | | | |

①-② 입양 활성화

◆ 사지 말고 입양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안락사·자연사 방지를 위해 '29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률 40% 달성

* '23년(24.2%) 대비 65% 증가(연평균 10%↑)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식개선 | ▶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양 대상 동물 공고·홍보 | ▶우수 입양사례 발굴·홍보, 문화 축제 시 입양존 구성·운영 |
| 시스템 | ▶정보 표기 비표준화,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움 | ▶정보 표기방식 표준화, 사용자별 맞춤형 인터페이스 제공 |
| 사후관리 | ▶사후관리 미흡 | ▶가정 정착여부 확인, 상담·사회화 교육 지원 |

1. 추진 방향

- 홍보·캠페인 등 확대에도 반려 가구 중 지자체·민간 동물 보호 시설을 통한 입양은 반려동물 입양경로의 약 10% 수준에 불과
 - *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 비중(국민의식조사) : ('20)12.1% → ('21)8.8 → ('22)11.6 → ('23)8.9
- 유기·유실동물을 입양하지 않는 이유로 연령·품종 등 선호 불일치, 질병·행동문제 등에 대한 우려, 입양 방법·절차 등 정보 부족이 높은 비중
 - * ('24, 국민의식조사) 어린 동물을 키우고 싶는데 유기·유실동물은 보통 연령이 높다(36.7%), 질병·행동문제 등이 있을 것 같다(30.6%), 입양 방법·절차 등을 잘 모른다(18.4%) 순으로 응답
- 반려동물 입양 시 직접 개체 확인이 가능(60.7%)하거나, 분양처에 대한 신뢰(51.0%), 접근성·편의성(40.2%)이 중요(중복응답, '24, 국민의식조사)
- 따라서, 입양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, 입양 대상 동물과의 접점 확대 및 건강상태·사회화 수준 등 관련 정보 제공 필요
-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인지도 부족 해소, 사용자 친화적인 이용 편의성 개선 등 활용도 제고 방안도 모색

2. 주요 과제

- (인식개선) 입양의 긍정적 인식 확산,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 다양화
 - 지자체 보호센터 내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, 사회화 훈련 등 우수 사례 발굴·홍보('25) 등을 통해 입양희망자의 부정적 인식 완화
 - (사례) ○○시는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활발히 운영하여 입양·기증* 비율을 70%까지 높이고, 안락사·자연사**는 약 10% 수준까지 낮춤
 - * 입양·기증: (18) 19% → (24) 70, ** 안락사·자연사 비율: (18) 74% → (24) 11
 - 정부·지자체 반려동물 문화축제 시 입양존*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입양희망자와 입양 대상 동물의 접점 확대
 - * 지자체 보호동물 놀이터 조성 및 입양대상 동물 소개, 입양 상담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홍보
- (정보제공)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공 정보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, 시스템 홍보를 통한 입양 활성화
 - 시스템 내 외형·건강·사회화수준 등 표기 표준화, 매뉴얼 마련 및 담당자 교육('25)을 통해 정보 정확도 제고
 - 시스템 사용자별(담당공무원, 입양희망자 등) 맞춤형 인터페이스 제공('26)* 등을 통해 접근성 개선
 - * (예) 시스템 접속 후 "입양희망자" 선택 시 입양대상 동물 공고,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안내, 입양 절차·방법 안내, 입양설문지·신청서 작성 등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화면 제공
- (인센티브) 입양 시 지원 확대 및 입양 후 관리체계 강화
 - 입양비 지원* 범위를 사회화 교육 등으로 확대('25)하고, 부담 완화**
 - * 질병진단·치료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내장형 동물등록, 미용, 펫보험가입비 등 지원(최대 15만원)
 - ** 자부담 비율 완화 또는 지자체 자율적인 지원 확대 시 평가에 가점 반영 등 검토
 - 입양 후 가정 내 정착 여부 확인(과양·재유기·판매 등 문제 예방), 문제행동 시 상담 및 사회화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('27~)

- (전문센터) 거점별 입양전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(~'29, 10개소)하고,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등에 입양 전문 안테나센터 연계 지원

< 입양 전문 안테나센터 구상(안) >

- (정의) 기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과 달리, 부지조성 및 건축이 필요 없고, '도심지' 내 상가를 임대하여 보호·입양시설로 리모델링 후 운영하는 방식
 - 기존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동물 중 심각한 질병·부상 등이 없고, 사회화가 되어 입양 가능성이 높은 동물을 안테나숍으로 이송·홍보하여 입양 확대에 기여
- (운영주체)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 운영 위탁(지정 동물보호센터)
- (운영방안) 임차 및 인테리어 후 즉시 운영(짧은 시일 소요), 소규모로 도심에 입점하여 유실·유기동물 인식 제고 및 홍보 캠페인 거점으로 활용
 - 상주 동물 수는 최소화하고 기호 시설(커피숍 등)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

- (규제개선) 단체·개인봉사자를 통한 입양 확대를 위해 현행 '1인당 3마리 초과 분양 금지' 규정을 완화하되, 자격요건* 등 강화

* 애니멀 호딩, 상업적 이용 등 방지를 위해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력,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등 사전에 경력 조회·검증

- 해외 입양 목적의 경우 입양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전평가를 실시*하고, 분양 이후 동물 재입양·관리 현황 등 사후 점검**체계 마련

* 입양희망자(해외입양 중개자)는 해외 현지 연계 단체, 홍보 방법, 재입양 기간 등 입양계획서 작성 →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담당자가 사전심사

** 재입양 완료 시 최종 입양 가정 등 정보, 생활환경 상태 등 증명(사진 등)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입양존 구성·운영 | | | | | |
| | ○ 시스템 편의성 개선 | | | | | |
| | ○ 입양 시 지원 확대 | | | | | |
| | ○ 입양전문 동물보호센터 지정 | | | | | |
| | ○ 규제개선 | | | | | |

①-③ 농장동물 복지 증진

◆ 현장에 맞는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편적·구체적 기준을 포함한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

* ('25) 돼지, 닭(산란계, 육계) → ('26) 소(한·육우, 젃소) → ('27) 염소, 오리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가이드라인 | ▶ 없음 | ▶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|
| 유통단계 제도개선 | ▶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| ▶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위반 축산물 판매금지, 공표 등 규제 강화 |

1. 추진 방향

- (일반농장)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축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대책 마련 필요
 - 축산현장을 고려, 쉽게 적용가능한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
 - 복지 활동 참여를 위해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검토
- (동물복지인증)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인증 농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필요
 - 정부, 기업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등의 협업으로 가치 소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축산물 시장 확대 유도
 - * (현행) 정부, 일부 기업만 참여하는 가치소비 FESTA 개최(연1회)로 홍보 효과 미흡
 - 도축장·운송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 축산물 처벌·규제를 강화하는 등 유통단계 위반에 따른 법적 규제 강화
 - * (현행) 과태료 처벌 외 위반 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지, 대국민 공표 등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

2-1. 주요 과제(일반 축산농장)

- (복지수준 향상) 축산농장의 현실을 고려, 농가 인식개선과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
 - (가이드라인) 일반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·구체적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**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***을 마련하여 제공
 - * 축산단체, 동물보호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**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마련**
 - ** 농장 운영의 기본적인 사육환경(조명, 온도, 환기 등), 사양 관리 방법(사육밀도, 축사관리, 청소, 소독 등)을 안내하여 **농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**
 - (추진계획) 가이드라인 마련(농식품부·축산과학원) → 마련(안) 검토 및 협의(축산단체·농장동물복지연구회) → 배포·홍보
 - * ('25) 돼지, 닭(산란계, 육계) → ('26) 소(한·육우, 젖소) → ('27) 염소, 오리
 - (보급) 축산업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각 지역 축협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 보급 추진('26)
 - (인센티브) 복지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**일정 기준***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**인센티브**** 등 지원방안 검토('25)
 - * (예시) 방목장 등 넓은 사육공간 제공, 스트레스 완화 사육환경 조성(깔짚 제공, 조명 등)
 - ** (예) 농식품부 보조사업 가점 부여, 가이드라인 준수농가에 대한 지정·홍보 등
- (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) 벤치마킹 및 실습환경 조성, 일반국민 대상 **홍보의 장**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농장 조성 추진('26)
 - 시범농장 설치에 필요한 규모 및 위치, 소요예산, 조성가능성(관련 법령)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방안 마련('25)

2-2. 주요 과제(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)

- (지원 확대) 관리체계 개선*('25)을 통해 자발적 사후관리를 강화하고, 농가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** 등 검토('25) 동물보호법
 - * (현행) 매년 전체 인증농장 대상 사후관리 → (개선안) 우수농장을 지정, 차년도 사후관리 면제
 - ** 시설개선 등 보조사업 가점 부여, 가치소비 홍보행사 참여시 우선순위 부여 등 검토
 - ** 동물복지인증 축산의 적정 사육시설, 가축관리 및 운송도축 세부 지침서 마련(축산과학원)

- (동물복지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)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관리·감독 강화
 - 불법(부정 표시 등 기준 위반) 유통되는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처벌·규제 강화*를 통해 신뢰도 및 안전성 확보('26) 동물보호법
 - * 과태료 상향(200 → 500만원) 및 판매금지, 표시의 제거정지, 위반조치사항 대국민 공표 등
 - 동물복지 도축장·운송차량에 대한 점검 및 교육 기준 강화('25)
 - * 정기점검(1 → 1회이상/년), 운송일지 작성(3 → 6개월), 운전자 교육(자체 → 의무)

- (인식개선) 가치소비(복지축산물)에 대한 홍보 확대로 소비 활성화 유도
 - 동물복지축산물 활성화 협의체*를 중심으로 릴레이 팝업 홍보** 행사, 대국민 참여 FESTA*** 확대, 온라인(SNS) 및 TV 홍보 등 추진('25~)
 - * 정부, 기업, 생산자·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활성화 협의체 구성('25)
 - ** (예) 수도권(지하철, 기차역, 백화점 등) 유통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) 중심 소규모 릴레이 행사
 - *** 참여 기업 확대, 생산자·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가치소비 FESTA 확대 개최('25)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 | | | | | |
| | ○ 동물복지 시범농장 | | | | | |
| | ○ 인증농장 관리체계 개선 | | | | | |
| | ○ 동물복지 유통단계 투명성 확보 | | | | | |
| | ○ 인식개선 및 대국민 홍보 | | | | | |

①-③ 실험동물 관리시스템 개선

◆ 전문성 강화, 3R*원칙 실현을 위해 **맞춤형 컨설팅**** 제공('26) 및 **실험동물관리원**(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) 제도 도입·시행('27)

* 3R원칙 : 개선(Refinement), 감소(Reduction), 대체(Replacement)

** 교육컨설팅 추진(안) 마련('25) → 전문가 pool 구성('26) → (신규희망) 교육컨설팅 추진('26)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전문성강화 | ▶없음 | ▶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및 교육 |
| 지도·감독 강화 | ▶행정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현장 지도·감독 기능 약화 | ▶외부점검반을 구성,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한 지도·감독의 효율성 강화 |
| 전문인력 | ▶전임수의사제 도입 | ▶실험동물 관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 |

1. 추진 방향

□ 동물실험시행기관*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실험에 대한 **교육·컨설팅** 및 새로운 시험법 등에 대한 **안내·교육** 등은 **미흡**

○ 전문가 단체 등과 협의하여 전문성·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험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**맞춤형 현장 컨설팅** 제공 및 **교육환경** 조성

* 동물실험시행기관(윤리위원회) 설치기관 : ('20) 449개소 → ('21) 481 → ('22) 517 → ('23) 550

□ 점검 인력 부족으로 매년 전체 실험기관 중 **10% 정도만 현장점검**을 추진하고 있으며 **전문인력** 지원을 위한 **제도 마련** 필요

○ **외부점검반**을 구성·운영, 위험 요소가 높은 실험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·점검을 추진하여 **관리·감독 기능 강화**

* 전체 실험기관 550개소 중 60개소(11%)만 현장점검 추진('23년 기준)

○ **전임수의사** 제도를 시행('24)하고 있으나 **의무 고용기관**은 전체 실험기관 중 **18%(100개소)** 정도로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보호·관리에 한계

* (현행) 전임수의사는 연간 1만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기관에만 의무 적용

2. 주요 과제

- (전문성 강화)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험법 적용 등 윤리적 실험 환경 조성에 기여
 -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*를 활용한 교육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으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
 - * 실험동물 관련 단체 및 동물복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교육컨설팅 등 추진 방안 마련
 - ** 교육컨설팅 추진(안) 마련('25) → 전문가 pool구성('26) → (신규희망) 교육컨설팅 추진('26)
 - 동물실험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, 새로운 시험법 도입·적용 등을 위한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시행기관의 지도·관리 강화('26) 동물보호법
 - * (현행) 최초 전임수의사 지정 시 교육에 대한 의무조항만 있음 → (개선안) 보수교육/연 1회
- (지도·감독 강화) 동물실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점검반 구성·운영('27) 동물보호법
 - 행정(점검)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점검반*을 구성하여 관리·감독 추진
 - * 실험동물 관련 학회·협회, 실험동물복지 전문가,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('27)
 - ** (1단계) 추진 방안 협의('25) → (2단계) 지침 마련 또는 법령 개정('26) → (3단계) 점검반 구성
 - 대학 등 동물실험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 후 위험 요소가 높은 실험기관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와 외부점검반이 합동 지도·점검 추진('28~)
 - * (현행) 동물실험기관에서 윤리위원회 설치·운영 → 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 지도·감독 → 동물실험기관에서 검역본부에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보고서 통보(1회/연)
 - ** (강화) 실적보고서 검토 → 대상군 선정·분류(실험의 위험도, 윤리기준 준수 여부 등) → 합동 점검 또는 대상군별 분류 점검 추진

- (자발적 관리 유도) 심의 후 위법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및 자발적 관리·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자진신고 시 감경 처분 근거 마련('25) 시행규칙
 - 과태료 부과기준(감경 개별기준)을 개정하여 과태료 1/2 감경 처분
 - * (현행)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심의 내용대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윤리위원회에 감독을 요청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농식품부장관에 통보(위법사항에 따라 처벌/감경규정 없음)

- (자격제도 정비)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(민간)자격 제도 도입 추진('27)
 - 실험동물 관련 협회 인증 자격을 '(가칭) 실험동물기술원' 민간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
 - * 자격기본법(교육부 소관)에 따라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관리·운영할 수 있음

- (공용윤리위 운영)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실험*을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, 운영·관리 기준 마련('26)
 - * (공공 영역) 유실·유기동물 및 봉사동물 대상 실험, 질병 방역 등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실험 (민간 영역)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기관의 실험, 학교의 동물해부 실습 등
 - 공공 영역의 실험은 공공기관의 공용윤리위(검역본부)에서 수행하여 엄격하게 심의, 평가 및 지도·감독하고,
 - 민간 영역의 실험은 민간 공용윤리위에서 수행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전문가 pool구성 | | | | | |
| | ○ 교육 및 컨설팅 추진 | | | | | |
| | ○ 전임수의사 보수교육 의무화 | | | | | |
| | ○ 실험기관 점검반 구성추진 | | | | | |
| | ○ 자발적 관리체계 개선 | | | | | |
| | ○ 민간자격제도 도입 | | | | | |
| | ○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| | | | | |

1-④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복지 증진

◆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동물 관리 기반 및 지원 근거 마련(~'25), (가칭)은퇴견 지원센터 설립·운영('27~) 등 추진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법적근거 | ▶봉사동물 정의, 동물실험 금지, 실태조사 근거 조문만 있음 | ▶봉사동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, 예산 지원 근거 등 마련 |
| 입양지원 | ▶민간 협회에서 은퇴견에 대한 병원비·사료비·장례비 등 지원 | ▶은퇴견 입양비 지원 사업 신규 추진 |
| 통합관리 | ▶국가봉사동물 운용기관별 은퇴견 입양 및 관리 | ▶은퇴견 통합관리 및 민간입양 등 지원(가칭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추진) |

1. 추진 방향

□ 현행 동물보호법 상 봉사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 및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,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이 부재한 상황

* 현행 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의 정의(제2조), 봉사동물 대상 동물실험 금지(제49조) 및 봉사동물에 대한 실태조사(제94조)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음

< 봉사동물 개요 >

- (개념) '봉사동물'이란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*
- * ①장애인 보조견, ②국방부·농식품부·관세청·국토부·경찰청·해양경찰청에서 수색·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, ③소방청에서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구조견 등
- (현황) '24년 기준 활동 중인 봉사견은 약 1,100마리이며, 매년 약 150마리(자연 은퇴 90, 훈련탈락 60)의 은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

□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, 은퇴 후 입양 활성화 지원 등 추진

2. 주요 과제

- (제도 정비)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, 예산 지원, 일반 관리 기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근거 마련(25) 동물보호법

< 봉사동물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(안) >

-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 인력·예산 확보 근거 명시
- 활동 중인 봉사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한 운용기관별 고시 마련
- 은퇴한 봉사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대한 진료비, 사료비 등 지원 근거 마련
- 보호·관리 및 민간 입양 등을 통합 추진하는 (가칭)은퇴견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

- (등록 의무화) 봉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동물 등록을 의무화 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정보 관리(25~)

- 등록 정보를 통해 봉사건 운용기관,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개선·정책 수립에 활용
- 봉사건이 은퇴 후 민간 입양된 경우에도 은퇴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하여 은퇴견 지원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

- (생애주기별 관리) 봉사건 훈련·활동·은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(26)

- (훈련·활동) 봉사건의 견종·특성을 고려한 적정 활동·휴식시간, 먹이·간식 제공, 사육환경 위생 관리 및 적정 관리인원, 번식, 건강 검진 주기 등
- (은퇴 준비) 봉사건의 임무 수행 능력,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은퇴 시기를 설정하고, 생활환경 변화 적응 훈련 등 실시
- (은퇴 후) 은퇴견(탈락견 포함)의 연령,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관 관리 또는 민간 입양 여부 결정, 민간 입양 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등 마련

- (입양 지원) 은퇴 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병원비·동물 등록비 등 지원 및 입양희망자-은퇴견 매칭 프로그램 운영 추진('25~)
 - 관련 협회에서 지원 중인 사업* 결과를 참고하여 병원비·동물등록비·사료비 등 정부 지원 사업화 검토
 - *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지원 업무협약('24.10.5)에 따라 동물병원협회·펫사료협회·반려동물장묘협회·동물장례협회·손해보험협회에서 병원비·사료비·장례비·보험료 등 할인
 - 입양희망자가 입양 대상 은퇴견과 여행·체험 등을 함께하며 교감할 기회를 제공, 실제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
 - * '24년 농식품부-문체부 협업으로 진행한 은퇴견 입양지원 프로그램의 정례화 등 검토
- (은퇴견 통합관리) 은퇴한 봉사견을 통합하여 보호·관리하고, 민간 입양을 추진하는 '(가칭)은퇴견 지원센터' 설립 추진('27~)
 - 은퇴견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,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양을 추진하던 것에서 통합적으로 입양 정보 제공 및 입양자 선정·관리
 - *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('26) → 지역 선정 및 착공('27) → 센터 운영('28)
 - **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입양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('25~)
 - 적정 면적, 관리 인력, 건강관리 방안 등 은퇴견 복지를 고려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 마련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봉사동물 지원근거 마련 | | | | | |
| | ○ 봉사동물 등록 의무화 | | | | | |
| | ○ 봉사동물 가이드라인 마련 | | | | | |
| | ○ 봉사동물 입양 지원 | | | | | |
| | ○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| | | | | |

①-⑤ 길고양이 복지 개선

- ◆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,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, 올바른 돌봄 방법 홍보 등을 통해 적정 개체수 유지
 * 7대 특광역시 길고양이 중성화 비율 : ('22) 19.8% → ('29) 40%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|---|--|
| 실태조사 | ▶ '20·'22년 조사 실시(7대 특광역시) | ▶ '25년부터 정기조사, 대상 지역도 확대 |
| 중성화 수술 | ▶ 민원 건별 중성화 추진 ▶ 동물병원에서 후 처치, 수술이 어려운 새끼 포획 시 방사 | ▶ 집중 중성화 추진 ▶ 중성화 수술 후 처치 강화(별도공간), 새끼 고양이 포획 시 입양도 가능 |
| 돌봄·관리체계 | ▶ 길고양이 돌봄가이드라인 게시 ▶ 동물보호단체 중심으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운영 | ▶ 돌봄방법 정기적·적극적 홍보·안내 ▶ 동물단체 뿐 아니라 지자체·캣맘·지역 주민 등 참여 하 협의체 확대 운영 |

1. 추진 방향

-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완화,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중성화 사업* 도입('18), 자묘 비율 감소 등 성과
 - * (지원조건) '24년 기준, 마리당 40만원 이내 지원(국비 20%, 지방비 80%)
- 길고양이 돌봄·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 발표('23.12월), 보호관리 문화교실 운영('22~) 등 건전한 돌봄 문화 정착 노력도 병행
- 일부 완화되었으나 아직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갈등* 및 불편이 존재하며, 사업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민원도 지속 제기
 - *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먹이 주기 관련 캣맘과 입주민과의 법적 다툼 심화
- 특히, 구체적인 중성화 수술 지침(대상 몸무게, 절개방식, 보호기간), 관리 방법(아파트 내 밥주기 금지) 등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대립
- 이견이 없는 사안은 사업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곧바로 개선·시행하고,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논의

2. 주요 과제

- (실태조사) 전국 길고양이 개체 수 및 분포,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주기적(매 홀수년) 조사* 추진('25~)

* 길고양이의 경우, '20·'22년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, 정기적 조사는 미비

- 기존 조사 대상인 7대 특·광역시 외 경기도 등 신규 지역도 포함

* 지자체별 자체 조사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합동 추진

< '20·'22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(농식품부) >

- (대상지역)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 등 7대 특·광역시
- (길고양이 개체 수) '20년 273마리/km²에서 '22년 233마리/km²으로 14.7% ↓
- (중성화 개체 수) '20년 36마리/km²에서 '22년 46.1마리/km²으로 28.1% ↑
 - * 중성화 비율 13.1%에서 19.8%로 증가
- (새끼 고양이 개체 수) '20년 81마리/km²에서 '22년 45.7마리/km²으로 43.6% ↓
 - * 새끼 고양이 비중 29.7%에서 19.6%로 감소

- (집중 중성화)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길고양이가 밀집한 특정 지역(약 20~40ha)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력 하 단기간에 집중 수술 추진

* (기존) 민원 발생 시 건별 중성화 → (개선) 지역·시기를 정해 집중 추진(50마리 이상)

- 일부 지자체 추진 사례 등을 분석하여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매뉴얼* 작성·배포('25)

* 지역 선정, 자원봉사자 모집, 개체수 파악, 수술 공간·장비 확보, 수행 방식 등 안내

- (중성화 후 관리) 민간단체·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중성화 수술 후 동물병원 외 별도 공간에서 회복 등 후 처치*를 체계적 실시('25~)

* 수술부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보호·관리하여 방사 시 적응 및 생존률 제고를 통해 해당 길고양이 영역 내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에 기여

- 수술이 어려운 자묘(2kg 미만)의 경우 어미와 함께 포획·보호*하다가 후 처치가 끝난 어미와 함께 방사하거나 별도 입양 추진(고시 개정)

* 후 처치 장소를 입양 전 새끼 고양이 보호 공간으로 활용

- (돌봄) 겨울철 등 취약시기 길고양이 안전사고 방지 및 올바른 보호방법에 대한 홍보를 매년 정례화('25~)
 - 겨울철 차량 엔진룸 끼임사고 예방, 겨울집 관리 방법 및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안내문 작성 요령 등 구체적 안내(보도자료, 포스터 등)
 - * (예시) 겨울철 차량 엔진룸 안에 숨어든 길고양이,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! 보도자료 배포·안내('24.12.20. 조간)
 - 올바른 돌봄방법을 안내하는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 지속 운영
 - * 매년 지자체를 공모·선정,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캣맘·일반국민 대상 강의 진행
- (관리체계) 대국민 관심 증가를 반영, 길고양이 관련 민원·정책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농식품부 인력 보완 추진('25~)
 - 이에 따라 기존 동물단체 중심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('23)에 지자체·캣맘·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로 확대 운영('25~)
 - 중성화 수술 방식, 돌봄 방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의된 사항에 한해 지침 또는 돌봄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·홍보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길고양이 실태조사 | | | | | |
| | ○ 집중 중성화 매뉴얼 배포 추진 | | | | | |
| | ○ 길고양이 후 처치 개선, 자료 입양 확대 등 | | | | | |
| | ○ 정기적 돌봄 홍보·교육 | | | | | |
| | ○ 농식품부 전담인력 마련 | | | | | |
| | ○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확대·운영 | | | | | |
| | ○ 사업지침, 중성화 요령(고시), 돌봄 가이드라인 등 개정 | | | | | |

①-⑤ 실외사육견 관리 강화

◆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확대를 통해 적정 개체수 유지, 유실·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동물복지 개선

* 실외사육견(마당개) 중성화 실적 20만 마리 목표로 추진('29년 누적)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실태조사 | ▶없음 | ▶실태조사 설계 및 신규 추진 |
| 중성화 수술 | ▶건주가 직접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워 사업 참여 저조 | ▶'찾아가는 중성화 수술' 서비스 지원 |
| 홍보 | ▶없음 | ▶올바른 돌봄 캠페인, 현수막 게시, 사업 안내 등을 통해 동물복지 인식 제고 |

1. 추진 방향

- 실외 사육 개체의 번식 및 유기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(마당개) 중성화 지원 사업 도입('22)
 - * (지원조건) '24년 기준 마리당 40만원(암컷 기준) 이내(국비 20%, 지방비 70%, 자부담 10%)
- 소유주 인식 부족 등에 따른 방치 등 열악한 사육 환경과 농촌지역 교통 및 동물병원 인프라 미비에 따른 중성화 사업 추진 저조
 - 또한, 사업대상 실외사육견 개체 수에 대한 통계자료 또는 실태조사 등이 미비한 상황으로 사업 현황 파악 및 효과성 평가도 곤란
- 동물보호단체·수의사협회·지자체 등과 협조·홍보하여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참여 확대

2. 주요 과제

- (실태조사) 실외사육견은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 확립 및 시범조사 용역을 신규 추진('25~'26)하고, 전국 확대 방안 등 검토('27)
 - 사전 행정조사*('25.上)를 바탕으로 방법론 설계 연구 추진('25), 이후 시범지역 전수조사 및 집중 중성화 후 효과성 분석('26)
 - * 마을 이·통장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전국 1,411개 읍면 대상 실외사육견 개체수 설문조사
- (동물등록) 등록 의무 지역 확대에 따라 실외사육견 등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, 소유자가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방식을 다양화
 - * 실태조사('25) 결과 분석에 따라 생체인식 방식 활용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폐지 방안 마련
 - 현행 법정 등록방식(내·외장형) 외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 조성
- (중성화 확대)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소유자가 동물병원까지 쉽게 왕래하도록 이송 지원 확대, 방문 수술 등 '찾아가는' 서비스* 지원('25~)
 - * 동물등록 제외지역 중심으로 하되, 필요시 지역 수의사회 협의를 통해 확대
- (홍보) 올바른 실외사육견 돌봄* 캠페인(카드뉴스·영상 등)을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, 마을별 안내(이·통장 활용) 등을 통해 인식개선('25~)
 - * 중성화 필요성 및 신청방법, 주거환경·목줄·산책 등 관련 적정 사육 기준 등 포함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실외사육견 실태조사 설계 | | | | | |
| | ○ 시범지역 조사·분석 | | | | | |
| | ○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'찾아가는 서비스' 지원 | | | | | |
| | ○ 돌봄 캠페인, 현수막 게시, 마을별 안내 등 | | | | | |

2 인프라 확충

2-①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

◆ 동물복지 업무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지원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자체 인력 | ▶ 지자체 동물보호·복지 담당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부족 | ▶ 지자체 적정인력 확충을 통해 동물보호·복지 업무 환경 개선 |
| 민간참여 | ▶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운영 | ▶ 민간영역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분석하여 민간단체 참여방안 마련 |
| 전담기관 | ▶ 동물보호·복지 업무 집행을 위한 전담기관 부재 | ▶ 동물보호·복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'동물복지진흥원' 설립 추진 검토 |
| 인센티브 | ▶ 별도 인센티브 부재 | ▶ 지자체 우수사례집 제작, 선진지 견학 등 포상 확대 |

1. 추진 방향

□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,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·복지 등 관련 업무 지속 증가

* '24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기질평가·안전관리 등 업무,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른 개사육농가 등 행정지도 업무 등이 추가

□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지속 호소하고 있으며, 관련 전문가·단체 등 또한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제기

* 동물 관련 업무는 넓은 업무 범위(축산·방역 업무 병행하는 경우 多)와 많은 민원 등으로 인해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상황

** 최근 3년간('22~'24) 동물복지 업무 부담으로 휴·퇴직한 지자체 인력은 155명이며 후임자로 신규 임용 공무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

□ 이에 인력 확충, 전문성 강화,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

2. 주요 과제

- (지자체 인력) 동물 보호·복지 관련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보호법
 - 동물등록건수, 유실·유기동물 구조 건수, 반려동물 영업장 수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인력 수준 검토(연구용역, '25)
 - 지자체의 동물 보호·복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동물 보호·복지 전담 조직·인력 및 업무 실적 반영 추진('25~)
- (민간 참여) 지자체 업무 중 민간 수행이 가능한 업무 분석 및 명예동물보호관, 자원봉사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('25)
 - 명예동물보호관 역할 및 활동 범위 확대*, 전국 단위 워크숍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·포상 등으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활성화 도모
 - * (현재) 동물보호관 지원, 단순 교육홍보 → (개선안) 동물등록제, 영업자 점검단속 등
 - 자원봉사 참여 분야, 자격 요건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
- (전문성 강화)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과정(온·오프라인) 운영 및 업무 매뉴얼 등 제작·배포('25)
 -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, 행정 업무 시 필요한 관련 법령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, 주요 업무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수행 능력 제고
 - *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물 보호·복지 전문 교육과정 및 동물 학대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사 관련 교육과정 등 마련

- (인센티브) 담당 공무원, 명예동물보호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지자체 선정·홍보 및 포상 확대('25)
 - 지자체 우수사례집 제작·홍보, 우수 지자체 담당자 대상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장관 표창 수여 등 추진

- (전담기관 설립) 동물보호·복지 업무 증가에 대응하여 집행 기능을 지원하는 '(가칭)동물복지진흥원' 설립 추진 검토
 - 동물복지수준·통계 등 평가·관리, 동물복지 교육 및 학대 예방 교육, 반려동물·맹견 안전관리 등 동물복지 주요 정책 지원 및 위탁 수행 등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지자체 적정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| | | | | |
| | ○ 동물 보호·복지 관련 업무 전문 교육과정 마련·운영 등 | | | | | |
| | ○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마련 추진 | | | | | |
| | ○ 민간참여 확대방안 마련 | | | | | |
| | ○ 우수 지자체 선정·포상 | | | | | |

2-②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

◆ 유실·유기 방지를 위해 모든 '개'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확대

* 등록의무 확대, 등록 지원 등을 통해 등록제 활성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등록 대상 | ▶지역 및 반려 외 목적 등 제외 | ▶전체 '개' 대상 등록 의무화 |
| 등록 지원 | ▶일부 지자체에서 등록비 지원 | ▶취약 지역 대상 등록지원 추진 |
| 등록 방식 | ▶내장형, 외장형 방식 인정 | ▶내·외장형 외 생체인식 방식 활용 여건 마련 |

1. 추진 방향

- 현재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,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
 - '23년 등록된 개는 누적 3,244천마리(신규 258)로, 동물등록 대상 개체수 대비 62.6% 추정
 - * 반려견 등록 수 : ('21) 누적 2,766천마리(신규 500) → ('22) 3,026(291) → ('23) 3,244(258)
- 현행법상 동물등록 예외 지역·대상* 존재, 소유자 유인체계 미비* 등으로 동물등록 참여에 한계
 - * '23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동물 미등록 사유로 필요성 느끼지 못함(29.3%)이 가장 많음
- 등록 의무 및 지원을 확대하고, 변경신고 홍보·점검 강화, 인센티브 체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
 - 등록 방식을 다양화하고 생체인식 방식 등 활용 여건 조성

2. 주요 과제

□ (등록 확대) 지역 및 반려목적 여부 등에 따라 등록 의무가 제외되던 영역을 폐지하여, 모든 '개'에 대해 태어나면 등록*하도록 의무화 동물보호법

* 등록대상 : 생후 2개월령 이상 모든 '개'

○ (대상) 동물생산업 영업장 내 부모견, 특수목적견(봉사동물·수렵견 등) 등 반려 목적 외 모든 개로 등록 대상 확대('25~)

- 동물보호센터('26, 입양시) 및 민간동물보호시설('27)에서 보호 중인 유실·유기견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의무화 확대

* 현재 운영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등록 의무를 명확화

○ (지역) 현행 제외지역* 실태조사('25)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, '29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폐지 방안 마련

*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·면, 도서지역은 시·도 조례로 의무 등록 지역에서 제외

□ (등록 방식) 현행 법정 등록방식(내·외장형 무선전자장치)을 유지하되,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 조성 시행령

○ 실증특례 검증협의체 운영 및 결과분석 후 민간 보험사 등이 개체 식별 방식으로 자율 활용하도록 기술표준 마련('26~) 등 여건 조성

○ 비문 등 생체정보 인식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('22~) 및 국가 봉사동물, 동물등록 제외지역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('27)

□ (등록 지원)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은 읍·면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활용하여 동물등록 전문센터 운영,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지원 추진('26~)

○ 취약지역*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 수수료 지원 검토('25~)

* 지자체별로 저소득층, 고령자,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

- (변경신고) 소유자 정보 변경, 동물 유실·사망 등 등록사항 변경 시,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변경신고 독려 및 점검 강화
 - * 반려인 돌봄상태 관리방안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 점검 추진
- (관리체계)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등록 여부 점검*을 확대하고, 제도 홍보 및 등록 유도 동물보호법
 - *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·공원 등은 동물등록 시 이용 가능
 - ** 구체적 사항은 필요시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 마련(~'25.4분기)
- 등록 후에는 동물병원에서 등록번호로 진찰기록을 관리하도록 권고 등 동물등록 활용 확대 방안 마련·추진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제외지역 실태조사 및 여건 분석, 단계적 축소 | | | | | |
| | ○ 등록대상 확대 | | | | | |
| | ○ 동물등록 전문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동물등록 추진 | | | | | |
| | ○ 실증특례 검증협의체 운영 및 기술표준 마련 | | | | | |
| | ○ 변경신고 독려 및 점검 강화 | | | | | |
| | ○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이용 시 점검 등 강화 | | | | | |
| | ○ 동물등록 활용 확대 방안 마련·추진 | | | | | |

②-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·관리 개선

◆ 유실·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'29년 직영 등 지자체 설치(시설위탁 포함) 동물보호센터 130개소 확보

* ('24) 87개소 → ('25) 102 → ('26) 109 → ('27) 116 → ('28) 123 → ('29) 130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시설·운영 | ▶ 부족한 시설을 지속 확충 중이나 아직 시설 포화, 인력도 부족 | ▶ 지자체별 중장기 시설 확충 목표 마련, 교육·자원봉사자 참여도 확대 |
| 합동점검 | ▶ 비정기적으로 실시 | ▶ 여름·겨울철 대비 매년 정례화(6·11월) |
| 입양 | ▶ 시설마다 입양 절차가 상이하여 개별 시설에 문의 필요 | ▶ 입양 관련 표준화,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대국민 가이드 마련 |
| 추진체계 | ▶ 정부 주도 하 동물보호센터 운영 | ▶ 정부는 시설을 건립하고, 운영에는 동물단체 등 민간 참여 확대 |

1. 추진 방향

- 유실·유기 동물을 구조·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28개소('23)로 직영 76개소(시설위탁 5개소 포함), 위탁 152개소
 - 그간 규모화된 지자체 직영 시설 및 관리 예산을 지속 확대('23, 374억원)해 왔으며, 매년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 후 시정조치
- 유실·유기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동물복지 인식 제고에 따라, 일부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관리부실 문제 언론보도·지적
 - 아직 대부분 시설이 포화상태로서 인력·예산이 부족하고, 운영지침 제정('16.3월)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가능한 구체적 매뉴얼 미비
 - * 유실·유기동물 구조 규모 113천마리 대비 전국 동물보호센터 동시 수용능력은 20천마리(17.4%)에 불과하며, 구조·보호비 예산도 연간 40천마리 수준(840백만원)
- 시설·운영 전반을 지속 개선하되, 입양 확대를 위한 사회화 교육 등 신규 과제도 추진하고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간 전문가 참여도 확대

2. 주요 과제

- (시설 개선) 부족한 시설을 지속 건립하되, 지자체(광역·기초)별 중장기(5~10개년) 보호센터 확충 목표 설정('25~)을 통해 체계적·단계적 접근
 - * (산출 예시) 목표 시설규모 = 평균 1일당 유실·유기동물 입소 수 × 적정 보호기간(일)
- 광역 단위 입양 특화 동물보호센터 단계적 도입을 통해 유실·유기동물 입양 기회 확대 및 광역·기초 보호센터 간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
 - * 기초 : 동물 '보호' 중심(1차 보호소) → 광역 : 도심지에 '입양' 전문센터 도입·운영(2차 보호소)
- 규격 중심 시설설계 가이드라인('22.2월)에 지역별 우수사례, 동물전문가 의견 등을 널리 수렴하여 개정·고도화 추진('25.10월)
 - * 실제 시설건립 초기 단계부터 동물보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사업지침 개정도 병행
- 입양·훈련시설, 주민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, 리모델링 시 사업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('25~)
 - * 반려견 훈련교육, 대학생 봉사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동물보호센터 역할 강화
- (운영·관리) 운영지침 준수가 용이하도록 구체적 현장 매뉴얼 마련,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의무교육 강화 및 자원봉사자 참여도 확대
 - 개·고양이 및 기타 동물의 행동·습성·사육·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별 보호동물 관리 매뉴얼 마련(검역본부 협조, '25~'26)
 -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대상 현장 교육*을 추가하고, 내용·이수조건 강화('26.上), 지자체 민원 응대 매뉴얼('26.下)을 제작하여 배포·안내
 - * (현행) 매년 농정원 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수 필요(법 시행규칙 제17조)
 - 자원봉사 참여 가능 세부분야,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, 민간 임시보호 활용 확대 등 근거규정*('25.5월) 및 가이드라인 마련('26.10월)
 - * 현행 운영지침은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승인, 출입 제한 등만을 규정
- (합동점검) 여름·겨울철 등 취약시기 대비 농식품부-지자체(시도·시군) 합동 현장점검을 정례화('25~, 6·11월)하여 보호동물 건강관리 강화
 - * 여름·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포스터 배포도 병행

- (입양 확대) 유실·유기동물 입양 전반에 걸친 대국민 가이드 및 업무 매뉴얼('27)을 마련하고, 입양 전·후 사회화 교육·훈련 자료 개발(~'27)
 - *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표준화(보호동물 외형·건강·사회화수준 등 표기), 동물보호·복지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 등과 연계 추진(검역본부 협조)
 -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등에 구조·보호동물 입양 전문 안테나센터 설치·지원

- (추진체계) ①동물보호단체·수의과대학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, ②등급제 등 평가체계 신규 마련, ③법령 개정 협의제도 구성·운영
 - 정부·지자체는 보호시설을 건립하고, 동물 관련 민간단체가 해당 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협업 우수모델 마련 추진*(~'28)
 - * 농식품부, 지자체, 동물보호단체 또는 수의과대학 간 위탁보호 MOU 체결 등 검토
 - 동물보호센터 시설·운영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 등급제 도입 및 유인체계 마련·시행('26~)
 - 시설·인력 기준, 준수사항,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('25~) 시행규칙 등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센터 확충 목표 설정 및 이행 | | | | | |
| | ○ 시설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| | | | | |
| | ○ 부대시설 등 확충 | | | | | |
| | ○ 종별 보호동물 관리기준 마련 | | | | | |
| | ○ 종사자 교육 강화,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·배포 | | | | | |
| | ○ 자원봉사 참여 확대 | | | | | |
| | ○ 여름·겨울철 합동점검 정례화 | | | | | |
| | ○ 입양 가이드 및 업무매뉴얼 확립 | | | | | |
| | ○ 사회화 교육·훈련 근거 마련 | | | | | |
| | ○ 입양전문 안테나숍 운영 | | | | | |
| | ○ 민관협업 우수모델 마련 | | | | | |
| | ○ 등급제 도입 및 유인체계 시행 | | | | | |
| | ○ 동물보호법령 개정 | | | | | |

②-④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

◆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이행, 시설·운영 정상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기간 운영 및 점검·홍보 강화

* '29년까지 신고제 이행(신고 또는 시설 폐쇄·이전) 100% 목표 추진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이행.점검 | ▶시행 유예기간 부여(최대 3년) | ▶제도기간 운영 및 현장점검 |
| 정상화 | ▶시설 개선 중심 | ▶불법 입지·건축물 합법화, 찾아가는 중성화 사육포기동물 발생 시 적정 보호 |
| 홍보 | ▶없음 | ▶자매결연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, 우수사례 발굴·홍보, 인증마크 시행 |

1. 추진 방향

- 애니멀 호딩 등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('23.4월)
 - * 전국 142개소에서 15,298마리(개 11,422, 고양이 2,259 등) 보호 중('24.5월 기준)
-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고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최대 3년* 부여하였으나, 아직 신고 신청은 저조('24.11월말 기준, 4개소 完)
 - * 신고 의무 : 보호동물 400마리 이상('23.4월부터), 100마리 이상('25.4~), 20마리 이상('26.4~)
 - ※ 신고 의무 미 이행 시, 동물보호법 제9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- 일부 규제 완화*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다수 시설이 농지·산지 및 건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입지 문제 대두
 - *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①가축분뇨배출 예외시설로 명확화, ②농지전용 허가 면적 확대(기존 1,000m²→ 10,000m²) 등 일부 입지 규제 완화 완료('23)
-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등 현장 컨설팅을 지원*('23~) 중이나, 일부 시설은 방문 및 컨설팅 자체를 거부
 - * 법률 전문가, 농식품부·시도·시군구 합동으로 시설 방문, 법적 쟁점 및 지원사업 등 안내
-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이행, 시설·운영 정상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3년 간 제도기간 운영 및 점검·홍보 강화

2. 주요 과제

- (이행·점검) 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국 142개 보호시설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, 컨설팅 지원 강화, 현장 방문 등 추진
 - 법정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한 보호시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 확인 후 적정 계도기간*(최대 3년) 부여
 - * 단, 해당 기간 내 동물보호법에 따른 신고제 이행이 가능할 뿐이며, 농지·산지 및 건축 등 타법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주지 필요
 - 컨설팅 시 입지·건축물 검토뿐 아니라 신고서 작성, 단체 또는 법인 설립 등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이행도 추가 지원('26~)
 - * 신고서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장 사례 및 법령 조치사항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실무 교육도 병행(워크숍 연 1회 이상 개최)
 - 이행계획서 제출 등 협조 거부 시 농식품부·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입·검사*를 실시하고, 문제점 발견 시 시정명령** 등 조치('25~)
 - * 동물보호법 제86조(출입·검사 등) 제2항제2호 : 농식품부장관·지자체장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가능
 - ** 동물보호법 제86조제7항 : 출입·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 조치 가능
 - 출입·검사 거부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*,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 정황 발견 시 합법 절차에 따라 고발·수사의뢰
 - * 근거 :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 제22호~제25호(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- (시설·운영 정상화) 단순 시설개선에서 나아가 불법 입지·건축물 합법화도 추가 지원하고, 보호동물 개체 수 관리 등도 지원 강화
 -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철거비 및 농지·산지 전용 부담비는 용자로 지원하고, 신·증축 비용 등은 자본보조로 지원('25~)
 - * ('22~'24년 사업지침) 불법 건축물, 토지 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은 지원 제외
 - '찾아가는 중성화*'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민간동물보호 시설 내 보호 개체에 대한 중성화 수술, 동물등록 등 지원('25~)
 - * 동물병원 수의사 등이 수술장비 등을 갖추어 해당 시설 방문, 중성화 수술 실시

- 계도기간 종료 후 시설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 예상되는 사육 포기동물에 대비, 사전에 보호시설 건립 등 지자체별 수용계획* 수립(25)

* 사전에 불법 입지 등으로 폐쇄가 예상되는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별 사육포기동물 예상 발생 규모 등을 파악, 신규 동물보호센터 확충 또는 타 시설 이송 등 조치계획 마련

- (우수시설 육성·홍보) 선도시설과 유망시설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, 지역별 우수 사례 발굴, 신고완료 시설에 대해 인증마크 발급·배포

- 선도시설과 유망시설 간 자매결연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, 시설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 공유·홍보

- 민간동물보호시설 우수 사례집을 발간(25), 지자체-민간 협업 사례를 강조·홍보하여 각 지역의 경쟁적 참여* 유도

*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 개정,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의회 적극 협조 필요

- 신고완료 시설에 대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인증마크를 발급·배포(25~) 하고, 명단 공개 및 해당 시설 중심으로 입양 등 홍보 추진

* 인증제 시행을 통해, 보호소 사칭 등 변칙영업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계도기간 부여 | | | | | |
| | ○ 컨설팅 강화 | | | | | |
| | ○ 합법화 지원, 찾아가는 중성화 등 | | | | | |
| | ○ 지자체별 민간동물보호시설 사육포기동물 수용계획 수립 | | | | | |
| | ○ 사육포기동물 인수(지자체 등) | | | | | |
| | ○ 우수시설 육성·홍보 (자매결연, 사례집, 인증마크 등) | | | | | |

②-⑤ R&D 기반 구축

◆ 동물복지 현안 및 미래 유망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,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동물복지 분야 R&D 기반 구축

* (기존) 농장동물·산업·의료 중심 → (개선) 동물보호·복지 주요 정책과제 연구 포함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추진체계 | ▶농식품부(농기평), 농진청(축산과학원), 검역본부 등에서 각각 추진 | ▶산·학·연이 참여하는 종합적 R&D 협의체를 구성·운영 |
| 연구분야 | ▶농장동물, 반려산업, 동물의료 중심 | ▶4대 신성장·유망분야 및 동물복지·보호 분야 등 연구 확대 |
| 지원방안 | ▶동물국 소관 R&D 사업 부재 | ▶동물복지 및 연관산업 R&D 신설 검토 |

1. 추진 방향

- 최근 동물 관련 R&D는 농식품부, 농진청, 검역본부 등에서 각각 추진 중이며, 주로 농장동물, 연관산업, 동물의료 분야* 중심
 - * 최근 5년('19~'23) 기준, 전체 R&D 추진과제 1,065건(2,287억원) 중 농장동물 594건(1,451억원), 연관산업 245건(564억원), 동물의료 141건(175억원) 순

-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, 동물복지 인식개선에 따라 관련 요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체계적·정책적 추진체계 부재

- 해외사례*와 달리,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각 기관 간 협조체계가 미비하고, 민간 참여도 저조

*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 R&D 추진 중, 정부는 관련 기반(법·제도) 마련

- 특히, 동물학대, 길고양이 등 유실·유기동물, 영엽관리, 인프라 등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미진*

* 최근 5년('19~'23) 기준, 전체 R&D 추진과제 1,065건(2,287억원) 중 13건(9억원)에 불과

-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 중심 R&D가 미비하므로, 정부가 주도하되 산·학·연 참여 종합적 R&D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기반 마련

- 기업·수의사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, 동물복지 분야 R&D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 중요도·시급성이 높은 사항 집중 지원

2. 주요 과제

- (추진체계) 농식품부·농진청·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및 산업계 협력 강화
 - 산·학·연 네트워크를 위한 동물복지 R&D 협의체*를 구성·운영('25~)
 - * 참여 대상 : 농기평, 농진청(축산과학원), 검역본부 담당자 및 산·학·연 전문가, 산·학·연 전문가 pool은 동물복지 분야별로 마련, 주기적 현행화 추진('25~)
 -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펫푸드, 펫헬스케어 등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여, R&D 성과와 수요자를 연결할 민·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(연구분야)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및 사회 분야에 걸쳐 유망분야 및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
 - 신성장산업으로 평가되는 펫헬스케어·펫테크·펫푸드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원천·핵심기술 연구개발 추진('22~'26, 314억)
 - * 기호성 사료첨가제, 피부질환 치료제, 면역세포 치료제, 혈액 대체제, 뇌질환 진단키트 등 과제
 - 시스템 생물학, 줄기세포, 질병 완화, 바이오소재, 영양학 등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 발굴('25) 및 중점 투자('26~)
 - * 연구개발 목표 : ①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, ②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확대('25: 2,500억원 → '29: 3,500억원), ③반려동물 맞춤형 첨단 치료 기술 개발·적용('29년 특정 질환 내 생존율 15% 이상 증가)
 - 반려동물 먹거리, 생활 관리 등 맞춤형 펫테크 산업 육성, 반려동물 의약품·의료 서비스 등 헬스케어 및 관련 플랫폼 개발 지원
 - * '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(안)' 반영('25)
 - 이외에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종합 지표 개발, 중성화 기법(약물 등) 연구 등도 검토

| 기술 분야 | 주요 연구개발 과제(안) |
|-------|---|
| 펫헬스케어 | ▶ (시스템 생물학) 신약 영향도 분석 가상 시뮬레이터, 가상 환자 모델링 등 |
| | ▶ (줄기세포) 치료 세포 분화, 줄기세포 생산, 면역거부 반응 등 기초연구 |
| | ▶ (노화) 임상학적·유전학적 신체나이 기준, 노화 지연 유전정보 등 |
| | ▶ (바이오센서) 생물학적 성분 신호 처리 기술(예 진단키트), 경구형 IoT 바이오 캡슐 등 |
| 펫테크 | ▶ (보조 로봇) 로봇틱스 장난감, 훈련·행동 보조 로봇 등 |
| | ▶ (모니터링) 활동량, 심박수, 호흡수, 감정 등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포착 등 |
| 펫푸드 | ▶ (질병 완화 등) 아토피 등 질환 맞춤형 처방식, 기호성 사료 첨가제 등 |
| | ▶ (영양학) 품종별·연령별 영양소 효용성, 종별·나이별 기초 영양 생리 평가, 기능성 사료 소재, 맞춤형 건강개선 기능성 소재 등 |
| | ▶ (바이오소재) 단백질 대체성 원료(곡류 등), 장내 마이크로바이옴, 주원료 국산화 등 |

□ (지원방안) ‘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’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 기술 개발 등 추진(‘25~)

- 향후 가치 「동물복지 및 연관산업 R&D」를 통해 산·학·연 의견을 반영하고, 동물복지·보호 및 연관산업 분야 주요 정책과제 연구
- 반려동물 관련 전공(수의학 등)과 컴퓨터과학·AI·BT 등 타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인력 육성 추진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복지 R&D 협의체 구성·운영 | | | | | |
| | ○ 반려동물 산업 연구 (4차 농림과학기술 종합계획) | | | | | |
| | ○ 동물복지·보호 분야 연구 | | | | | |

②-⑤ 동물 관련 전문인력 육성

◆ 반려동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'29년까지 동물보건사 5,000명,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,000명 배출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물보건사 | ▶자격시험 총 3회 시행, 동물병원 수의 보조로 활동 | | ▶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검토,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고도화 |
|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| ▶국가자격 시험(2급) 최초 실시 | ⇒ | ▶1급 행동지도사 도입,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 기여 |
| 기타 인력 | ▶현황 파악·관리 미흡 | | ▶현황 파악, 지원 사항 검토 |

1. 추진 방향

-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영업 활성화로 관련 인력 수요 지속 확대
 - 전문성 있는 동물병원 진료보조 및 간호 인력 배출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('21), 총 3회의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3,495명 배출
 - 양육자 교육, 반려견 행동교정 등을 위한 행동지도사 356명 배출
- 국가자격 고도화로 공인 인력 안정 육성 및 국가자격 수요 발굴
 - 동물보건사·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난이도 및 운영체계를 지속 정비하고, 시장 요구 반영해 역할 범위 탄력 조정
 - 반려동물 영업·산업 관련 직종 중 전문성 강화 및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직종의 현황 파악 강화 및 장기 관리 방안 검토
- 동물 보호·복지 정책의 일선 인력으로 활용해 정책 효과성 제고
 - 동물보호센터, 양육자 교육 등 전문성 발현 가능 직무에 적극 배치

2. 주요 과제

- (동물보건사) 역할 확대 등 검토해 「중장기 발전 방안」 마련('25)
 - 수의사·동물보건사의 실수요에 기반한 단계적 역할 확대 추진
 - * (현재) 행정업무, 소극적 진료보조 → (개선) 교육과정 강화 후 재활치료 보조 등 역할 확대
 -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구축 및 실습 교육 강화
 - * 15개 표준 교과목 세부 교수요목 개발 완료('25), 필수 교과목 확대 검토
 - 지자체 동물병원* 내 동물보건사 채용 확대로 서비스 전문성 강화
 - *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부설 동물병원 포함
- (행동지도사) 자격시험 고도·특성화 및 사회적 역할 확대 추진
 - 1급 행동지도사(행동교정 상담 및 맹견 기질평가 특화)자격 시험 도입('25)
 -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 행동지도사를 양육 지도, 문제 행동견 유기 방지 및 유실·유기동물 행동평가 등에 활용 확대
 - * (현재) 반려견 훈련 중점 → (개선안) 유실·유기·피학대동물 행동 평가·교정 및 상담
- (기타 인력) 현행 민간 자격 현황 파악 강화 및 전문성 확대 검토
 - 반려동물 8개 영업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현황 파악 및 자격시험 평가 과정 내 최신 동물 보호·복지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
 - 자격 운영 애로사항 청취, 전문성 강화 위한 지원 사항 등 발굴
 - * 반려동물 전문인력 육성 간담회 개최, 영업별 종사자 권장 역량(안) 연구용역 등 추진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보건사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| | | | | |
| | ○ 1급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| | | | | |

3-①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 추진

◆ 개식용 종식, 동물복지 교육, 안전관리 등 현안 관련 홍보·캠페인을 민관 협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분과 구성·운영

* '29년까지 반려동물 비양육자의 「동물보호법」 인지도를 양육자 수준('24년 88%)으로 향상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추진체계 | ▶ 정부, 지자체, 동물보호단체의 분산적인 메시지와 방향성 | ▶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 구성해 민관협업 동물복지 인식개선 추진 |
| 추진전략 | ▶ 공익광고, 공모전 등 다매체 활용 | ▶ 체험형·맞춤형, 양방향 매체 활용 강화 |
| 동물보호 주간 | ▶ 단기적·일회성 행사 중심 | ▶ 법정 '동물보호의 날' 첫 시행 계기, 지자체 릴레이 방식으로 지속적 관심 제고 |

1. 추진 방향

- 동물학대, 개 물림 사고, 펫티켓 준수 여부, 길고양이 돌봄 등 사회 갈등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식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 - *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홍보가 '필요하다'는 의견은 76.2%로, '필요하지 않다'는 의견은 5%에 불과('24, 국민의식조사)
- 동물복지 홍보 등에 있어 정부·지자체·동물보호단체에 분산하여 각각 자체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와 방향성을 제시 중
 - 정부·지자체 주최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단기적·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개최되어 효과 지속성에 한계
-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식용 종식, 동물복지 교육, 안전관리 등 현안 관련 홍보·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추진·관리
 - 인식개선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정부-지자체-민간이 동물복지 관련 통일된 메시지를 지속 공유하여 효과성 제고 필요

2. 주요 과제

- (추진체계) 캠페인·교육 등 동물복지 인식개선 추진 시 농식품부·지자체·민간 협업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 신설·운영('25~)
 - ①반려문화 확산 캠페인, ②민·관 시너지 창출 방안, ③동물보호·복지 교육 확대, ④개 식용 종식 이행, ⑤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과제 논의
 - 캠페인 기획 시, 동물단체 등과 메시지 방향성, 홍보전략, 참여 유도 방법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, 추후 평가 및 개선방향도 제시
- (추진전략) 여가·일상을 연계한 캠페인 진행 및 양방향 매체 활용 소통 환경 조성으로 반려인·비반려인 간 공존 문화 확립
 - 관계부처(문체부, 교육부 등) 협업을 여가·일상생활과 접목한 체험형 캠페인*을 확대해 전 연령층이 동물복지에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* (예시)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여행, 동물복지 인식개선 위한 콘서트·전시회 등
 - 기존 캠페인 참여율이 낮았던 세대*를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캠페인 참여도 제고
 - * '24년 '가족의 발견' 행사 참여 세대 : 30대(32%) > 20대(26) > 40대(21) > 50대(16) > 60대(5)
 - TV·라디오·유튜브 등 전 국민이 선호하는 매체*를 적극 활용해 반려인, 비반려인의 동물복지 및 펫티켓에 대한 인식 차이 완화
 - * 동물보호·복지 홍보 시 효과적인 매체: TV·유튜브(66.3%) > SNS(26.9) ('23, 국민의식조사)

- 방송, 숏폼,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펫티켓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반려인, 비반려인 간 이해와 소통 증진

* (예시) 10.04(천사, 동물보호의 날 의미) 해시태그 챌린지 참여 유도, SNS 내 동물복지 웹툰 및 반려인·비반려인 간 갈등 해결 사례 공유 게시판 개설 등

□ (동물보호주간) 민간 주도로 정부·지자체 및 국제적 협력 활성화,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'동물보호의 날*(10.4일)'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

*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 예정

- 권역별로 돌아가며 매년 다른 지자체(캠페인 공동 진행)와 협업하고,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가 지역별 동물복지 인식격차 완화 및 공감대 확산

* (예시)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홍보·캠페인 등 행사 계획 수립, 농식품부·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등

- '동물보호의 날' 현장 제정·선포를 통한 미래세대의 지향점 공유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분야별 홍보관* 운영 등 프로그램 다양화

* (예시) 유기유실동물 입양, 동물 의료, 국가 봉사건 유관기관,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등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복지위원회 분과 운영 | ■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○ 여가생활 접목 체험형 및 매체활용형 캠페인 추진 | ■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○ '동물보호의 날' 행사 개최 | ■ | ■ | ■ | ■ | ■ |

3-②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

◆ 민간의 현장 경험 활용 등 민·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명예동물 보호관 위촉 확대 및 역할 다양화 등 추진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|---|--|
| 관련제도 | ▶ 명예동물보호관 위촉·운영 | ▶ 명예동물보호관 역할, 활동범위 확대 |
| 활동·교육 | ▶ 교육·홍보 활동 위주,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 ▶ 위촉 전 6시간 이상 교육의무 | ▶ 전국단위 연간계획,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 ▶ 위촉 후에도 연 1회 정기교육 추진 |
| 소통의 장 | ▶ 별도 간담회, 워크숍 등 소통의 장 부재, 우수사례 미발굴 | ▶ 명예동물보호관 협의회·워크숍 등으로 우수사례 공유, 애로사항 청취 |

1. 추진 방향

- 동물보호단체들은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구조·보호,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활동하고 있으며,
 - 동물복지위원회* 및 각종 간담회,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등을 통해 정부, 지자체와 협력 추진 중
 - * 정부위원(5명) 외 민간위원(15명) 위촉(동물보호단체 2명, 관련 산업계 5명, 학계·연구계 등)
-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, 동물 보호·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 등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민간의 역할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을 활성화하여, 민간의 현장 노하우 활용 등 민·관 시너지 창출 도모

< 명예동물보호관(동물보호법 제90조) 개요 >

- (임명권자) 농식품부 장관(검역본부장), 지자체장
- (자격) 동물보호단체 추천자, 동물보호관 자격요건 충족자, 관련 학식·경험이 풍부한 자
- (역할) 동물보호·복지 교육·상담·홍보 및 지도, 동물학대 행위 신고 및 정보 제공,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·보호 지원, 동물보호관 직무수행 지원 등
- (인력/실적) '23년말 기준 644명/ 4,068건(교육·홍보 2,358, 학대신고 93, 구조·보호 332, 직무지원 1,285)

2. 주요 과제

- (제도 정비) 지자체, 명예동물보호관 등 의견수렴,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 보완·정비 농식품부 고시
 -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 및 활동 범위 확대, 책임과 한계 명시, 정기 교육(연 1회) 의무화,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활동 보고* 등 신설
 - *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주요활동 계획 수립·통보(농식품부→지자체),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·추진 및 정기적 활동 보고(지자체→농식품부)
- (활동·교육) 동물등록 및 영업장 점검·단속 등 집중 활동 기간 운영,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전국 단위 점검반 구성·운영 등 추진
 - 동물보호 관련 제도 안내, 활동 시 준수사항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기적 교육(온·오프라인 연 1회) 추진
- (소통의 장) 각 지역의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,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마련
 - 전국 단위 명예동물보호관 협의회 구성, 민·관 합동 워크숍(연 1회) 개최 등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범업 및 소통 확대 추진
 -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·배포 등 적극 홍보하고, 정부포상(농식품부장관표창) 수여 등으로 명예동물보호관 우수사례 확산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정비 | | | | | |
| | ○ 가이드라인 마련, 교육 추진 | | | | | |
| | ○ 협의회 구성·운영 | | | | | |
| | ○ 우수사례 발굴·확산 | | | | | |

3-③ 동물보호·복지 교육 확대

◆ 책임감 있는 동물보호·복지문화 정착을 위해 미래세대 교육 활성화, 입양 전 교육 의무화('26~) 등 대상자별 맞춤 교육 확대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--|--|--|
| 미래 세대 | ▶'동물사랑배움학교' 운영 * ('24) 62개소(유아 10, 초등 52) | ▶(초등) 늘봄학교까지 확대, (중고)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반영 |
| 반려인 | ▶의무 규정 없음 * 지자체 보호센터는 입양 전 교육 이수 요구 | ▶입양 전 교육 의무화 |
| 공무원·영업자 등 | ▶관련 법·제도 안내, 매뉴얼 배포 | ▶현장 교육 확충, 전문 교과 추가 ▶명예동물보호관 등 민간 교육 지원 |

1. 추진 방향

□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매년 11만 마리 이상의 유기·유실동물이 발생*하고, 동물 학대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**로 사회 문제 지속

* 구조·보호동물 수(검역본부): ('20) 130천마리 → ('21) 118 → ('22) 113 → ('23) 113

**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(경찰청): ('21) 5,497건 → ('22) 6,594 → ('23) 7,245

○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감 강화 및 사회 문제 예방 차원에서 입양 전·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존재

* 양육자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해 89.6% 긍정(입양 전후 모두 필요: 823)('24 국민의식조사)

□ 펫티켓 준수 여부, 길고양이 돌봄 활동 등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지속되고, 반려인-비반려인 등 인식격차도 여전히 큰 상황*

*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긍정 응답: 반려인 86.8/비반려인 35.6('24 국민의식조사)

○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위해 학교 교육 필요

□ 지자체 업무 담당자, 동물 관련 영업자 등 교육의 경우 법령·제도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 대응, 동물관리 방법 등의 교육은 부족

2. 주요 과제

- (미래세대)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·복지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, 특히 장기적 효과성을 감안하여 미래세대 교육 강화
 - * '동물사랑 배움학교' 운영 결과, 생명존중(4.34/5점→4.51) 및 인성함양(4.17→4.37) 이해도 증가, 긍정적 행동 변화(생명존중의식 89%, 동물 이해 92%, 펫티켓 97%)
- 유·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, 중·고등학교 인정교과서 제작 및 우수사례 발굴·홍보를 통해 교육과정 반영 확산
 - * 동물사랑배움학교 운영 확대('22~),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('25~), 중학교 교과서 제작('24) 및 교육과정 반영('25~),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추진('25) 등
- 늘봄학교·정규교과과정 운영학교 등의 교원 대상 동물보호·복지 온라인 교육*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이수율 제고
 - *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('교사가 알아야 할 동물보호·복지 이야기') 운영
- (반려인) 반려인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및 입양 후 정기적 교육 이수,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등 추진
 - (입양 전)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자 대상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도입 후 판매업·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 단계적 의무화 추진('26~)
 - * '동물사랑배움터'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, 동물보호단체·전문가 등 교육콘텐츠 개발·보완('25)
 - (입양 후) 동물학대 자가 체크리스트 등 학대 방지, 펫티켓 등 양육자 준수사항, 신규 도입 제도 등 정기적(매년) 교육 안내·제공
 - * 동물등록정보의 양육자 연락처와 연계하여 교육 안내 링크 등 제공
- (공무원) 지자체 담당자 현장 교육*을 확충하고,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입양지원, 동물학대 사건 등 주요 현장 민원 사례별 대응 교육 강화
 - * 보호센터 종사자(現 매년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수), 동물보호관(매뉴얼 배포) 등
- 공무원 대상 동물복지 분야 교육 강화(직장교육 확대 등) 추진('27)

- (민간) 명예동물보호관, 자원봉사자 등 민간 역할* 확대 및 교육 지원 병행
 - * 시설 운영, 명예감시활동(학대동물 신고·구조·보호 지원) 및 상담·지도, 교육·홍보 등
- 명예동물보호관 의무교육에 연 1회 정기교육 추가*(’25)
 - * (현행) 위촉 신청 전 6시간 이상 교육 → (개선) 위촉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교육
- (영업자) 동물복지 인식 교육 및 영업정지 대상자 교육 강화를 통한 영업자 준수사항의 자발적 이행 유도,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 등 추진
 - (영업 전) 허가(등록) 전 의무교육에 동물 행동, 학대 등 전문 교과를 추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동물에 대한 이해도 제고
 - * (현재) 동물보호법, 영업자 공통 준수사항, 영업별 준수사항 → (개선) 영업자 준수사항, 허가(등록) 준비사항, 동물학대, 동물행동, 기본건강관리 등
 - (영업 중) 연간 영업자 정기교육과 영업정지 대상자 추가교육 콘텐츠 개발*, 동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영업장 종사자 온라인 교육** 추진
 - * (정기교육) 모범사례, 영업자 점검 사항 등 이슈 중심, (추가교육) 위반사례, 법령해설 중심
 - ** (현재) 영업자가 종사자에 전달교육 실시 → (개선) 종사자 개별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이수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고등 교과서 개발 | | | | | |
| | ○초등 늘봄학교 운영 | | | | | |
| | ○입양 전 교육 의무화 | | | | | |
| | ○입양 후 교육 지원 | | | | | |
| | ○지자체 담당자 현장교육 확충 | | | | | |
| | ○명예동물보호관 정기교육 추가 | | | | | |
| | ○영업자 교육 강화 | | | | | |

3-④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

◆ 「개식용종식법」에 따른 종식 기한('27.2월) 내에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령 | ▶「축산법」상 가축에 개 포함 | ▶'개'의 반려동물 지위 명문화 |
| 개식용업계 | ▶총 5,898개소 운영 중 | ▶췌 업계 '27년까지 전·폐업 이행 |
| 사회적 공감대 | ▶개식용 소비층 일정 유지 및 개식용종식법 인지도 저조 | ▶개식용종식 공감대 확산을 통해 국내 개식용 문화 종식 |

1. 추진 방향

- 개식용 논쟁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사안, 국제행사 개최 등 주요 계기별(88올림픽, 2002월드컵 등) 쟁점화되며 국격 문제 대두
 - 최근 반려견 양육 가구 수 증가, 동물복지 인식 개선 등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
 -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개식용종식법”)」 제정('24.2.6.)
 - * 법에 따라 '27.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 행위 금지, 현재 운영 중인 업계는 '27.2월까지 전·폐업 의무 발생
- 「개식용종식법」에서 규정한 종식 기한('27.2월) 내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등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
 - 다수 국민은 '개'를 식용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「축산법」상 가축에 '개'가 포함되어 관련 정비 검토

- '27.2월까지 개식용 유통망 종식을 위해 업종별* 특성을 고려한 전·폐업 지원 및 사육규모(46.6만 마리, '24.8월) 선제적 관리 추진
 - * 총 5,898개소(개사육농장 1,537, 도축상인 221, 유통상인 1,788, 음식점 2,352)
 - ** 생계안정 목적 폐업지원금은 영업행위가 불법이 아닌 사육업에 한정 지원하되,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합리적 구조로 설계
- 일부 국민은 지속 소비 의향을 보이고 「개식용종식법」 인지도도 충분치 않아 국민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
 - * ('24. 케이스탯) "현재 개고기 섭취" 12.8%, "'27.2월 이후에도 계속 섭취 의향" 3.3%
"개식용종식법 인지" 39.7%, "개식용종식법 금지 행위 인지" 34.2%

2. 주요 과제

- (법령 정비)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'개'의 반려동물 지위 명문화
 - 「축산법」 상 가축에서 '개'를 제외하고 「동물보호법」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검토(~'27)
 - * 연관 법령 개정 대상 및 관련 후속 대책 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('25)을 토대로 추진
- (전·폐업 지원·점검) 행·재정적 지원과 「개식용종식법」 상 의무 이행 상황 철저 점검을 통해 쏘 업계 전·폐업 이행 유도
 - 업종별 전·폐업 인센티브 및 컨설팅을 통해 전·폐업 지원(~'27.2월)
 - 개사육농장·도축상인 대상 폐업이행촉진지원금(농장 한정),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, 전업 자금 저리융자 등 전·폐업 지원 추진
 - * '25년 개식용종식 전·폐업 지원 예산 농장주 972억원, 도축상인 108(총사업비 기준)
 - 전업 후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개사육농장 대상 타 축종 전환 사육에 필요한 경영분석, 기술지도 등 전업 컨설팅 지원
 - * (컨설팅 지원단) 국립축산과학원, 농협 친환경컨설팅방역부, 지자체 전문가 등 300여 명

- '27.2월 이후 식용 목적 개 사육 금지에 따라 농장주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사육규모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기 점검(~'27.2월)
 - 농장주는 증·입식 중단(폐업예정일 1년 전부터), 개체 관리 및 사육 규모 감축 계획 등을 이행계획서에 구체화하여 보완(~'25.2월)
 - 농식품부·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(분기별), 감축 미이행 및 개체 관리 미흡 농가* 대상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(~'27.2월)
- * 폐업예정일 3개월 전 기준 신고한 사육마릿수의 30% 이상 사육 중인 농장을 '중점 관리농장'으로 지정하여 폐업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
- 농식품부·지자체 점검반 구성 및 여름철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'27.2월 이후 개 식용 목적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 행위 단속 철저
- (공감대 형성)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다각적 캠페인·홍보 및 동물복지 교육 체계 연계 개식용종식 교육콘텐츠 확산('25~)
 - 개식용종식 주요 정책 홍보(추진배경, 법령 주요내용, 기대효과 등), 보호동물 입양 장려 및 식문화 개선 등 캠페인 추진
 - 생애주기별 맞춤형 동물복지 교육 체계*와 연계하여 개식용종식 관련 교육콘텐츠(배경, 주요정책 및 기대효과 등) 확산
- * 동물보호·복지 교육 포털(<http://apms.epis.or.kr>), 찾아가는 '동물사랑배움학교' 등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법령 정비 | | | | | |
| | ○ 전·폐업 지원 | | | | | |
| | ○ 전·폐업 이행 점검 | | | | | |
| | ○ 개식용 행위 단속 | | | | | |
| | ○ 공감대 형성 | | | | | |

3-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

◆ 개에 의한 상해·사망사고 방지 및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
개물림 사고건수를 '29년까지 현행 50% 수준으로 감축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리체계 | ▶법정 맹견 중심 관리체계 | ▶실태조사 기반으로 관리체계 정비, 일반견 안전관리 강화 |
| 인프라구축 | ▶시·도별 기질평가시설 운영, 사육불허견 관리시설 없음 | ▶권역별 광역 기질평가시설 확충, 사육불허견 관리시설 확보 |
| 제도 개선 | ▶맹견사육허가, 기질평가의 면제 또는 유예 불가 | ▶중성화수술, 기질평가 예외 사유 확대 |

1. 추진 방향

-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·사망사고 등 지속 발생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
 - 한편, 현재 개물림 사고는 사고건의 종류, 사고 유형과 무관하게 소방청의 사고접수 후 출동 건에 대한 단순 집계로 조사
 - *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(소방청) : ('17) 2,405건 → ('19) 2,154 → ('22) 2,216 → ('23) 2,235
-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부재,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 설치 등의 인프라 부족
 - '24.4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 중이나 중성화 수술 및 기질 평가에 대한 거부감,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허가 신청 부진
- 국내 사육 문화·환경을 고려하여, 공격성 등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표준 훈련 프로그램 개발
 -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허가 요건 완화(중성화 수술 예외 사유 확대) 및 기질평가 방식 개선 등도 개선

2. 주요 과제

- (관리체계 구축) 개물림 사고 예방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사회 조성
 - 개물림 사고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사고 유형 및 위험도 분석('26~) 등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
 - 개물림 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고건 및 법정 맹견 관리방식 개선
 - 위험도 분석에 따른 반려견 교육훈련, 임시 보호, 인도적 처리 등 명령
 - 동물복지 교육·체험 과정 및 교재에 개물림 사고 예방·대처방법 등 국민안전 관련 내용 확대
 - *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('25~), 중학교 교과서 제작('24) 및 교육과정 반영('25~),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추진('25) 등
- (인프라 확충) 사육 허가제 시행에 필요한 기질평가장, 훈련소 및 사후관리 시설 등 필수 인프라 확충
 - 권역별 기질평가장을 확대하고 평가대상, 역할 등도 확대 추진
 - * (예시) 대상사고건·맹견 + 일반견, 기^능기질평가 + 모의 기질평가 훈련, 사회화 등
 -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기질평가 시설 일부를 사육블허 개체 관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('25년 1개소 지정·시범운영)

- (제도 개선) 맹견사육허가제의 중성화수술 요건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, 맹견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
 - 맹견사육허가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예외 사유를 확대(별도 관리 방안과 연계)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('25) 동물보호법
 - 법정 맹견 소유자들이 조기에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·지자체 지원방안 마련
 - * 찾아가는 1:1 컨설팅 및 모의 기질평가 지원 등 검토
 - 맹견 증가를 억제하고 개체별 관리를 위해 일반인 무허가 사육 단속, 맹견 사육정보 현행화를 추진('25~)
 - 맹견 수입 및 취급 시 관련 내용 신고 의무화('26)를 통한 이력관리 강화*
 - * 수입신고, 취급허가 신청 시 이름, 주소, 맹견 품종, 수입 목적 등을 전산화하여 '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'에서 관리, 맹견 개체수 관리 등에 활용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동물보호 법령 개정 | | | | | |
| | ○ 반려견 기질평가, 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| | | | | |
| | ○ 선진 반려문화 조성 확산 | | | | | |

4

동물영업·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

4-① 동물영업 관리 강화

◆ 대량생산·판매 구조와 결부된 불법·편법 영업으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**쏘 영업자* 점검 준수율 95% 이상 유지**

* 반려동물 생산·판매·수입·전시업 등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추진기반 | ▶국화단체 등에서 영업관리 강화 요구 | ▶영업장 복지개선을 위한 동물복지 위원회 분과 구성·운영(실태조사·의견수렴) |
| 제도 | ▶마리당 사육면적, 판매동물 관리 기준 및 시설 갱신 의무 부재 | ▶생산·판매·전시업에 걸쳐 기준을 마련하고, 갱신제도 도입 |
| 자율준수 | ▶허가당시 기준만 준수해 영업장별 동물 관리수준 편차가 큼 | ▶교육 강화, 모범영업자 인센티브 마련 |
| 점검 | ▶중앙-지자체-민간 합동·기획점검 체계 구축 | ▶합동·기획점검 정례화, 명예동물 보호관 등 민간 참여 확대 |

1. 추진 방향

- 우리나라는 번식장(허가 기준 2,011개소, '23)에서 생산된 개·고양이가 경매장(17개소)을 거쳐 펫숍(3,154개소, '23)에서 중개 판매되는 구조
 - * 영국은 브리더(생산업자·일반개인) 직거래 또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입양(루시법, '21)
- 동물 학대 문제 방지를 위해 그간 수입·판매업 허가제 전환, 무허가·무등록 영업장 직권 폐쇄·말소, 처벌강화 등 **영업관리 강화** 추진
- 최근 불법 번식장 사건 등에서 보듯이 반려동물 대량생산·판매와 결부된 불법·편법 영업 및 동물학대 문제는 지속
 - 현실적으로 동물관리 및 점검·단속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, 일부 동물단체는 생산업자(브리더) 직거래 구조로 전환 요구
-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정책 심의·조정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, 자율성 유도, 점검 강화 등도 병행

2. 주요 과제

- (추진기반) 반려동물 영업구조 개편 등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정책 심의·조정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* 신설·운영('25~)
 - * 동물복지 관련 단체 및 학계 전문가, 반려동물 영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위촉
- 국내외 실태·경제성 분석 등 영업장 생산 및 복지 여건 조사(25.下) 추진 후,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('26~)
- 단기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, 영업구조 개편(직거래) 및 법제화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

< 주요 쟁점별 논의 방향(안) >

- (생산방식) 생산·판매자가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과 동물복지 의식을 갖추도록 교육·검증
- (거래방식) 반려동물 대량 판매구조 개선 및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등 규제 방향
- (생산기준) 판매·출산 월령 제한, 출산휴식기 등의 과학적 근거 및 경제성 분석

- (제도개선)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업종별 개선사항을 추진하되, 세부 사항은 실태조사 결과 및 동물복지위 분과 논의를 거쳐 조율
- (생산업) 마리당 사육 면적, 관리인당 사육 마릿수 설정 등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단계적 상향으로 동물별 관리수준 향상(25) 시행규칙
 - * 생산비용 상승과 경제성 및 허가기준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별도 검토
- (판매업) 판매동물 관리기준* 명확화, 표준계약서 제정·보급으로 양육자·공급자 간 갈등 최소화, 파양유기동물 발생 방지 기여 시행령
 - * 동물의 일상관리기준 배포 및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정보 제공 의무화 등
- (전시업)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, 전시 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관리 기준* 마련(29) 동물보호법
 - * 관람객 먹이주기 제한 등 가이드라인, 자연채광 등 관리기준 명확화, 중성화 의무 등
- (갱신제) 생산·수입·판매·전시업에 대한 허가갱신제 도입으로 시설·인력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및 동물 복지수준 향상(28) 동물보호법
 - * 준수기준 강화(23.4) 이전 허가받은 영업자의 생산시설 등 환경개선 지원 검토(26)

- (자율성 유도) 영업자의 자발적 동물복지·관리기준 준수 유도를 위해 단계적 교육 강화('25~) 및 모범영업자 대상 인센티브 마련 동물보호법
 - 영업별 동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, 연간 준수사항 제작·보급을 통해 동물관리 및 영업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교육에도 반영('25)
 - 24시간 상시 동물관리 영업장(생산·전시 등) 내 동물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가 지정 또는 채용 근거* 마련
 - * 행동지도사 채용 시 영업장 점검 주기 연장, 동물관리 규모별 수의사 지정제 도입 등('29)
 - 모범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*하고, 우수사례 교육·홍보를 통해 타 영업자들의 자율적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
 - * 점검주기 연장, 영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 검토
- (점검 강화) 중앙-지자체-민간 합동·기획점검 정례화로 효율적 점검 추진
 -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명확한 업무분담과 협력 매뉴얼(점검-구조-사후관리)을 공동제작하고 합동연수, 정례 점검으로 지속 협력
 - 전국 단위 명예동물보호관 지정 확대 및 영업장 점검 적극 활용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판매표준계약서 보급 등 | | | | | |
| | ○ 영업 갱신제 도입 | | | | | |
| | ○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| | | | | |
| | ○ 보호단체-지자체 협력점검 | | | | | |

4-① 영업장 동물 이력관리 체계 구축

◆ 무분별한 동물 생산 및 불법·편법 동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
 쏘 생산업 부모견 등록률 100% 목표 추진

* 부모견 등록번호와 함께, 자견 개체번호를 부여해 이력관리체계 구축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이력관리 시스템 | ▶ 부모견 등록 의무 부재로 무분별한 생산 및 불법 동물 유입 가능 | ▶ 부모견 등록정보와 자견 정보 연동 및 전산화로 반려동물 공급경로 투명성 확보 |

1. 추진 방향

□ 전국 반려동물 생산·판매·양육 현황이 단계별, 개체별로 파악·관리 되지 않아 정확한 동물통계관리에 한계

○ 생산업은 개체관리 카드제 도입(12) 및 경매장 현지 확인 방식으로 동물 이력관리를 실시 중이나, 기록 연계(생산-(경매)-판매) 불가

○ 무허가 생산·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, 사기 분양*·동물학대** 등 문제 지속 발생

* 부모견을 파악할 수 없어, 잡종을 값비싼 순종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 등

** 330㎡ 미만 영업장에서 48마리 부모견이 63마리 강아지 생산(실태조사, '21.12)

□ 투명한 동물 생산·판매·양육구조 구축으로 불법·편법 동물 유입 방지 필요

○ 실태조사(23) 결과에 따른 영업자 개체번호 표준안 마련 및 제도 개선, 전산화 등 추진

2. 주요 과제

- (이력관리) 생산·판매 단계까지 반려동물 개체정보 파악이 가능케하여 투명한 관리구조를 확보하고 동물복지 기반 영업 체계 확립 시행령규칙
 - (생산업)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로 이력관리 시작점을 구축하고 자견 개체번호를 부모견 출산일과 연동시켜 체계적 이력관리('26)
 - * 부모견 의무등록 시행('26.4) 전 조기등록 및 표준화된 개체번호 재부여 독려
 - * 생산업장 번식용 고양이 등록제 도입 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(중장기)
 - (판매업) 영업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, 판매 동물의 정보(부모견, 백신접종 여부 등)를 사전 확인 후 판매 시 반려인에게 제공하여 투명성 제고
 - * 양육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부모견 확인 후 구매와 등록 가능
 - (수입업) 수입 검역 시 수입국의 동물등록번호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, 판매 후 이를 국내 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체계적 이력 관리('28)
 - * 영업자가 동물, 예방접종, 수출·수입자 정보를 시스템에 수입 전 기재하도록 개편하고 국내 반입 후 품종 등의 문제 확인 시 판매정보 위반으로 처분
 - (사망신고) 장묘시설 처리 후 확인서 발급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통계 및 이력 관리 강화('26)
- (시스템 개선) 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으로 그간 수기 방식으로 업체별 기재하던 모견과 자견의 개체번호 부여 방식을 표준화('26)
 - * 생산, 판매, 양육자의 동물등록까지 개체번호가 연계되도록 기능 확충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생산업 부모견 등록 | | | | | |
| | ○ 수입동물 등록의무화 | | | | | |
| | ○ 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 | | | | | |
| | ○ 영업자 시스템 사용 교육 | | | | | |

4-② 동물의료 체계 정비

◆ 반려동물 건강·복지 증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동물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을 정하는 동물의료 체계 개편 추진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료체계 | ▶동물 의료 정보 비대칭 존재 | ▶적정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문·상급병원 도입 |
| 의료 인프라 | ▶동물의료 정보 통계 기반 부재 | ▶동물의료 통계 기반 마련 |
| 의료복지 | ▶동물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관리 미흡 | ▶유실·유기동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|

1. 추진 방향

- 반려동물 양육 증가 및 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동물 의료 시장 규모, 동물병원 및 진료수의사 수는 지속 증가
 - *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(예정치 추정) : ('20) 1조 3,468억원 → ('23) 1조 9,767천억원
 - ** 동물병원/진료수의사 : ('14) 3,979개소/5,745명 → ('24) 5,177(30.0%↑)/8,765(52.2%↑)
- 그간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, 알권리 강화 및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동물의료 개선 대책* 추진('23~'24)
 - * 부가가치세 면세,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, 진료비 조사·공개, 진료 절차 표준화 등
- 반려동물 전문진료 수요 증가, 의료정보 통계 부족,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, 인프라, 서비스 부족
 - 동물의료기관의 종류·기능에 대한 규정 부재로 동물병원의 자의적 의료기관 명칭 사용·홍보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자의 혼선 유발
 - 동물의료 정보생산·수집 체계 미비로 효율적 정책추진에 한계
 - 유기·유실동물 등 대상으로 실질적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필요
- 동물의료 체계 개편, 인프라 구축, 의료복지 지원 등을 통해 동물 건강 및 복지 증진 도모

2. 주요 과제

- (의료체계) 동물병원 분류를 경증(기초·예방)·중증, 외래·입원 등으로 구분, 상급동물병원·전문병원 지정, 수의전문의 양성 등 동물 의료체계 개편
 -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, 수의전문의 인증기준 마련('26) 및 관련 법 개정 추진('27) 수의사법
 - 수의과 대학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우선 지정하여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 하고, 응급실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 검토
 - 전문과목 선정(내과, 외과 등) 및 수련병원(대학병원 등)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·단체 등 위원회 구성·운영('25~)
- (인프라) 동물 관련 산업·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 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
 - 처치, 처방 등 진료 공통 수집 정보의 표준화 후 전체 동물병원에 적용, 동물의료 정책 및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 - * ('25)동물의료 표준코드 확립 → ('26)전자차트에 표준코드 탑재 → ('27~)병원 진료기록 관리
- (의료복지) 유실·유기동물 등 동물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동물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
 - 대학부속 동물병원, 대형병원 등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유기·유실동물의 진료 접근성 확대 및 수련의 실습기회 부여('26~) 수의사법
- (종합계획)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「제1차 동물의료 육성·발전 종합계획('25~'29)」* 수립(6월)
 - * (수의사법 제3조의2) 동물의료 육성·발전 방향, 지원체계 구축개선,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의료 체계 개편 | | | | | |
| | ○ 동물의료 인프라 구축 | | | | | |
| | ○ 동물의료 복지 지원 | | | | | |

4-② 동물의료 인력 양성 기반 정비

◆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중장기 수급 계획 마련('26), 수의전문의 도입('27), 수의대 교육 고도화('26~)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력수급 | ▶동물의료인력 수급 계획 부재 | ▶분야별 전망 등 반영한 「동물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」 마련 |
| 전문 수의사 | ▶전문과목 인정 기준·체계 부재 | ▶수의전문의 기준 마련 및 배출 |
| 교육 고도화 | ▶수의대 민간 자율 인증 실시 | ▶교수, 시설 기준 고도화 검토 및 농장동물 교육 기회 강화 |

1. 추진 방향

- 동물병원 증가, 가축전염병 다양화, 연관산업 발전 등 동물의료 수요 다양화 및 확대 추세에 대응한 중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 부재
 - 수의대 '89년 이후 10개로 유지 중이며(정원 : 496), 면허자 22,806명('24)
 - * 현업 14천명 중 임상 8,765명(반려 7,182(82%), 농장 981(11%)), 공직 2,463, 산업 1,026('24)
 - 반려동물의 가족화·고령화로 전문화된 진료 수요 또한 증가하나, 수의전문의 양성 체계 및 진료 과목별 분류 체계가 없는 상황
 - 수의과대학의 교육 자원(교원·시설) 및 교육 과정(기초·실습 교육 강화, 교과목 다변화 등) 보완을 위한 교육 고도화 논의 지속
- 쏠 분야 차질 없는 동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적정 수급 계획 마련,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고도화 필요
 - 분야별 전망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 균형 파악 및 수의대 농장동물·산업계 등 진출 유도를 위한 필수·기초 교육 강화
 - 수의전문의 육성으로 양육자 수요 충족 및 국내 임상 수준 제고

2. 주요 과제

□ (수급) 동물의료 분야별 수의사 적정 수급 계획 마련

- 수급 현황 정밀 진단 및 중장기 수요 예측 위한 연구용역 실시('25)
- 분야별 교육 기반 정비, 공공분야 처우개선, 동물의료인력 정보 관리 강화 등 포함한 「동물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」 마련('26)
- 보조 인력(동물보건사) 역량 및 활용도 제고 위한 발전계획 수립('25)

□ (수의전문의) 전문과목 분류·정비, 수의전문의 양성 체계 마련

- 전문 진료과목 분류 체계 및 수의전문의 근거 법제화('27) 수의사법
- 해외 및 사람 의료 참고, 학회·민간 중심으로 자율 운용되는 수의 전문의 인정 기준을 통합해 신뢰도 높은 국내 단일 기준 마련('27)

□ (교육 고도화) 수의사 역량 강화 및 진로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

- 내실 있는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교원·시설 역량 상향 검토, 농장 동물 실습 교육 기회 확대 등 균형 있는 대학 교육 실시('26~)
- 수의사 역량 제고 및 선발의 투명성·전문성 강화를 위한 면허시험 고도화,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한 출제 기준 정립 및 실기 평가 강화('29)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동물의료 인력 수급 계획 | | | | | |
| | ○ 수의전문의 제도 도입 | | | | | |
| | ○ 수의대 교육과정 고도화 | | | | | |

4-③ 반려동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

◆ 반려동물 양육자의 수요에 부응하고, 기술 혁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'29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16조원 목표로 연관산업 육성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거법률 | ▶없음 | ▶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|
| 펫푸드 | ▶별도 기준 없음 | ▶분류·표시·영양 등 별도 기준 적용 |
| 통계 | ▶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통계 마련 | ▶이외 연관산업 통계도 지속 마련 |
| 인프라 | ▶제품을 실증하는 시설 등 부재 | ▶One-Welfare Valley 조성 |
| R&D | ▶펫푸드 중심의 연구개발 | ▶펫테크, 펫헬스케어까지 R&D 확대 |
| 수출 | ▶판로개척(박람회 참여 등) 중심 지원 | ▶검역, 통관 등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|

1. 추진 방향

- 펫휴머니제이션*(Pet-Humanization), 기술혁신,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
 - *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 등 사람과 같이 대하는 사회·문화적 현상
- 동물복지 선진국(북미, EU) 사례와 같이 수준 높은 돌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펫푸드, 펫헬스케어, 펫테크 등 관련 산업 육성
- 소비경향이 다양화·세분화되면서 새로운 시장*이 출현·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
 - * (예시) 비만, 알러지, 피부 관리, 소화·위장 관리 등을 위한 기능성 펫푸드 등
- 펫푸드 안전, 기능, 영양* 등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양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특화된 펫푸드 제도 마련
 - *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렵고, **오로지 반려인의 선택으로 급여** 되기에 **영양기준을 충족하는 '완전식품'** 개념이 중요(한국수의영양학회, '21)
- 실태조사, 통계 등 중장기적으로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 기반 및 우수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제정 추진

2. 주요 과제

- (제도개선)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펫푸드 산업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(육성기반) 「(가칭)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」 제정 추진('25~) 법 제정
 - * 주요 제품 품질 인증 기준 마련,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, 특구 지정 등 중점 검토
 - (펫푸드) 반려동물(개·고양이) 식생활을 반영한 영양 표준 도입* 등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 개선('26 시행) 고시
 - * (현재) 단미, 배합, 보조 등 원료 기준에 따라서만 표기 → (개선안) 기존 + '반려동물 완전사료, 반려동물 기타사료' 등 영양성분 기준에 따른 표기 병행
 - (안전관리) 반려동물 집단 사망 관련 사료, 피해 반려동물 등에 긴급 대응*할 수 있는 제도((가칭)반려동물사료안전법) 마련('25~) 법 제정
 - * 피해 반려동물 모니터링 및 조사 협조 요청, 의심 사료에 대해 잠정 판매 중단 등
 - (통계조사) 산업 규모, 통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주요 산업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, 통계 조사 추진(~'29)
 - *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(통계청) 개정 시 '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' 신규 반영('24)
- (인프라) 반려동물 관련 제품·서비스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* 선호도 등 실증 시설인 'One-Welfare Valley' 조성(~'27)
 - * 실증 참여 반려동물은 소유자가 있는 반려동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진행
- 제품에 대한 기호성·효과성 등을 실증하는 전문서비스* 제공하고, 반려동물 복지·문화를 위한 프로그램(훈련, 놀이 등) 운영('27~)
 - * 실증 요소(기호성·소화율 등) → 실증테스트(1일~1달) → 데이터 제공 및 보완·실증
- One-Welfare 조성·운영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, 산업계, 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 운영('24~)
 - * 동물에 대해 비윤리적인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

□ (R&D)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투자 필요 분야 기획 및 펫테크, 펫헬스케어 분야까지 연구개발 지원 확대

* 기능성 펫푸드, 의약품·의료기기 등 연구개발(~'26, 314억), 줄기세포, 바이오소재 등 중장기 연구 과제 발굴('25) 및 중점 투자('26~)

| 기술 분야 | 주요 연구개발 과제(안) |
|-------|---|
| 펫헬스케어 | · (시스템 생물학) 신약 영향도 분석 가상 시뮬레이터, 가상 환자 모델링 등 |
| | · (줄기세포) 치료 세포 분화, 줄기세포 생산, 면역거부 반응 등 기초연구 |
| | · (노화) 임상학적·유전학적 신체나이 기준, 노화 지연 유전정보 등 |
| | · (바이오센서) 생물학적 성분 신호 처리 기술(예 진단키트), 경구형 IoT 바이오 캡슐 등 |
| 펫테크 | · (보조 로봇) 로봇틱스 장난감, 훈련·행동 보조 로봇 등 |
| | · (모니터링) 활동량, 심박수, 호흡수, 감정 등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포착 등 |
| 펫푸드 | · (질병 완화 등) 아토피 등 질환 맞춤형 처방식, 기호성 사료 첨가제 등 |
| | · (영양학) 품종별·연령별 영양소 효용성, 종별·나이별 기초 영양 생리 평가, 기능성 사료 소재, 맞춤형 건강개선 기능성 소재 등 |
| | · (바이오소재) 단백질 대체성 원료(곡류 등), 장내 마이크로바이옴, 주원료 국산화 등 |

□ (수출활성화) 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펫푸드 등 수출 확대

- 국가별 해외 인증, 성능시험 등 제품 고도화 지원,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 지원 및 바이어 발굴 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
- 특허·상표권 등록 등 해외 진출 서비스 제공, 국가별 검역 절차 등 맞춤형 정보 제공, 제품등록·통관 등 실무 교육으로 역량 제고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| | | | |
| | ○ 반려동물 사료제도 개선 | | | | |
| | ○ 산업 별도 분류 및 통계 조사 | | | | |
| | ○ One-Welfare Valley 조성 | | | | |
| | ○ 반려동물 연관산업 연구개발 | | | | |
| | ○ 수출지원협의체 운영 | | | | |
| | ○ 박람회 등 수출 지원 | | | | |

4-④ 동물장묘업 운영 합리화

◆ 영업 수요, 안전 및 지역주민 편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제한 규제 완화(~'26) 및 운영 합리화

* 반려인 접근성 제고를 통한 동물장묘업 및 연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행 | | 개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지 | ▶인가밀집지역 인근 설치 불가 | | ▶장례식장의 도심 진출 가능 |
| 기반 | ▶반려동물 자연장 제도 부재 | ⇒ | ▶자연장 제도 신설 등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확대 |
| 접근성 | ▶이동식 화장 실증특례 운영 중 | | ▶이동식 화장차량 제도화 방안 마련 |

1. 추진 방향

□ 동물장묘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, 입지 제한,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에 한계

○ 입지 제한에 따른 접근성 불편 및 비용 부담* 등으로 이용률 저조**

* 동물장례식장은 사람과 달리 도심지역(준주거, 상업 등) 내 설치가 불가하고, 동물장묘업체가 사체처리, 장의업을 겸업해 업장별 서비스 비용의 편차가 큼(18만원~299)

** 땅에 묻음(50.9%), 동물장묘업체(14.8), 동물병원위탁(9.0), 종량제봉투(7.2) (23, 국민의식조사)

□ 제도 개선과 주민 편의성 제고 등 동물장묘업 합리화 추진

○ 영업 수요, 안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묘시설 입지제한 완화 및 新사업 제도화

* 연구용역, 실증특례 실시 등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

2. 주요 과제

- (제도개선) 장묘시설기준 세분화 및 규제완화,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묘업 활성화 동물보호법
- 장례식장의 인가밀집지역 내 설치근거 마련*, 장묘시설에 야외장지, 자연장** 등을 추가하고 세부시설 기준 마련(~'26)
 - * (현행) 장례식장·봉안시설·사체처리시설 등 전체 제한 → (개선안) 장례식장에 한하여 허용
 - ** 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수목·화초·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

< 현행 입지 허용 지역 >

| 구분 | 사체처리·봉안시설 | 장례식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물 | 자연녹지, 계획관리지역 외 별도 조례로 정하는 녹지지역 | 사체처리·봉안시설과 동일 |
| 사람 | | 녹지·주거·상업·공업지역 및 인가밀집지역 |

-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립 시 지자체의 인근 지역주민 지원*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협력·상생방안 마련('25)
 - * (예시) 지자체가 장묘·편의시설 설립·운영 시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권 부여
- (편의증진) 반려인의 서비스 접근성 및 선택권 제고 동물보호법
 - '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'에 대해 규제특례 (산자부 규제샌드박스) 실증 진행 결과분석('25~)* 후 제도화 방안 마련('26)
 - * 실증데이터(안전시험, 민원내역 등) 분석, 건축법·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 개정 협의 등
 - 기본서비스와 선택서비스를 분리, 가격 계시를 통해 반려인 선택권* 제고('28)
 - * 사체처리, 개별염습, 유골함 등 통합비용 → 사체처리(기본), 서비스별 추가 비용 게시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정 | ○ 관련 실증특례 검토 | | | | | |
| | ○ 동물장묘업 합리화 방안 마련 | | | | | |
| | ○ 법령 및 고시 개정 | | | | | |

4-⑤ 반려동물 서비스업 제도 개선

◆ 제도개선*,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
펫서비스 활성화

* 반려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영업(동물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) 제도 정비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도개선 | ▶ 관련 규정 부재한 신규영역 존재 | ⇒ | ▶ 기준 명확화로 일선 혼선 해소 |

1. 추진 방향

-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**반려동물 서비스업 영업 형태 추가**(위탁관리·미용·운송, '18)
 - 반려동물 관련 영리 행위와 관련한 시설·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 규정을 통해 영업장 내 동물복지 확보 노력
 - *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,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리 등
- **신규 서비스 수요***를 반영한 동물영업 제도화 및 관리기준 마련
 - *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, 펫서비스 중개 플랫폼 등 실증특례 신청 사례도 다양화
- 반려인 등 현장 수요 및 기존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타법 규율사항 등을 검토하여 **영업범위 확대** 추진
 - * 동물학대, 질병전파, 이용자의 동물유기 등 동물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명확한 관리기준 제시와 준수 유도 병행

2. 주요 과제

- (제도개선) 신규 수요를 감안하여, 현행 영업 및 새로운 영업 형태의 실태조사, 해외사례 연구('26)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시행규칙
- (위탁관리·미용업) 펫시터·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 영업 형태를 영업장 기반 방식에서 가정방문 **출장 영업**까지 범위 확대 추진('27)
 - 일정한 시설·설비 기준을 갖춘 **기존 영업자의 출장 영업 허용** 추진
 - 자격요건·영업일수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**신고제 도입***을 통한 부업 형태까지 허용하는 방안 검토
- * (현행) 출장영업 관련 규정 부재 → (개선방향) 특정한 경우(예: 일정 영업일수 미만 영업자)에 한하여 신고 시 출장 영업 허용
- (동물운송업) 신규 영업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송구역, 본거지, 동물사체운송 가능 여부 등 관련 규정 명확화('28)

< 동물운송업 관련 주요 쟁점 >

- ① (운송 구역) 영업 등록한 지역 외 영업 구역 허용 여부
 - * 예시: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에 대해 별도로 규정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)
- ② (사용본거지*) 영업 희망 지역과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관할 지자체 지정 방안
 - *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으로,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(개인), 주사무소 소재지(법인)에 해당
- ③ (사체 운송) 동물장묘업 또는 동물운송업 차량의 사체운송 허용 여부
 - * 사람의 경우 장례 참여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종에 포함(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)

3. 연도별 추진계획

| 구 분 | | '25 | '26 | '27 | '28 | '29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서비스업 현황 실태조사 | | | | | |
| | ○ 관련 유사·해외사례 연구 | | | | | |
| | ○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및 법령 개정 | | | | | |
| | ○ 관련 실증특례 운영·검토 | | | | | |

V. 추진체계

1 관계부처·지자체·민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

- ◆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요 현안 이슈에 체계적 대응
- ◆ 지자체 워크숍, 정책추진 현황 및 계획 점검 등 회의체계 정착
- ◆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협의 체계 구축

- (관계부처) 주요 관계부처 간 ‘(가칭)동물복지 협의회’ 구성·운영
 - 정기회의(반기별) 개최를 통해 부처별 주요 이슈 공유·논의
 - 주요 사례 유형별 하위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

< 관계부처 주요 협의 사항 (예시) >

- ▶ 동물학대 등 범죄발생 관련 사항(경찰청)
- ▶ 경계지역 등 야생동물 관련 사항(환경부)
 - * (사례) 마당개-들개 및 길고양이-들고양이 등 관리, 안마도 사슴 사례와 같은 협업 필요 과제 등
- ▶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관련 사항(식약처)
- ▶ 펫보험 활성화 관련 사항(금융위)
- ▶ 정책영역 확대에 따른 신규 협의 사항 등
 - * 반려동물 서비스 영업 범위 확대, 동물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, 동물복지 관련 인력 육성·확충 등

- (지자체) 중앙-지방 워크숍 외 정기 회의체계(반기별)를 통해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계획 점검, 우수사례 공유·확산 등 소통 활성화
 - 정책별로 이루어지는 추진 상황 점검(수시) 등을 통합 운영하고, 우수 지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 참여 유도
- (민간) 동물보호단체·전문가 등의 정책 참여 채널을 다양화·확대
 -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등(생산·판매업 관리강화,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등)에 대하여 지속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
 - *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 등
 -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등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-관 합동 캠페인 추진단을 구성하여 연간계획 수립·추진

◆ 실질적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하여 「동물보호법」에서 「동물복지법」으로의 법령 체계 개편 추진

- (조사·연구)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와 해외 선진국 법 체계를 비교·분석하면서 개편 방향 및 내용 등 검토
 - 해외사례 비교·분석,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사항 조사·연구 등 추진
- (의견수렴) 국회 동물복지포럼, 동물보호단체,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고, 관계부처(법무부, 환경부, 기재부 등)와 지속 협의 추진
 - 관련 토론회, 간담회 등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법령체계 개편 방향 의견 수렴
 - 민법 개정*(법무부), 대상 동물 확대(환경부·해수부 등), 동물복지 전담 기구 및 재원 마련**(기재부) 등 관계부처 협의 지속
 - * 「민법」 상 물건에서 동물을 제외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
 - ** 재원 확보 관련, 예산 확대, 신규 세금 도입, 기금 또는 자조금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,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
- (법령 개정)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 복지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 필요 사항 지속 검토 및 법령체계 개편(안) 마련
 - 동물등록제 활성화,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제 도입, 영업 관리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 소요 적극 추진